

# 租稅 關聯資料 體系의 變遷과 改善方向

## 序 言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관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합리화가 요청되고 있는데, 合理的인 租稅政策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수립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具體的인 資料를 통해 납세자들을 설득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신뢰받는 조세정책을 펼 수 있다.

우리나라의 租稅政策 樹立過程을 살펴보면 너무도 직관에 의존하는 감이 있다. 과학적인 평가보다는 직관적인 구호에 의존함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비효율적이었다. 그 근본 이유는 조세 관련정보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세 관련연구와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세 관련자료의 체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세 관련자료의 체계를 時系列的으로 分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조세 관련자료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분석과 방향제시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본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 관련자료 체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體系的으로 要約하고 改善方向을 제시하였으므로 정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 관련 연구자에게는 세목별로 조세 관련자료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므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저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저자는 본 연구의 초안을 읽고 건설적인 제안을 주신 두 분 익명의 심사자와 원내 세미나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원내 연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자료분석에 아낌 없는 도움을 준 本院의 李宗書, 姜信惠 研究員

과 원고정리에 수고한 李賢暎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 目 次

I. 序 論 .....	9
II. 租稅 關聯資料 體系的 變遷 .....	11
1. 租稅 關聯資料의 種類 .....	11
2. 國稅 關聯資料의 變遷過程 .....	13
3. 地方稅 關聯資料의 變遷過程 .....	33
III. 租稅 關聯資料 體系的 評價 .....	35
1. 國稅 關聯資料의 評價 .....	35
2. 地方稅 關聯資料의 評價 .....	43
3. 外國의 租稅 關聯情報 內容 .....	47
4. 綜合評價 .....	48
IV. 現行 租稅 關聯資料 體系的 問題點과 改善方向 .....	50
1. 資料公開에 대한 認識 提高 .....	50
2. 年間 統計資料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52
3. 微視資料의 公開 .....	56
V. 結 論 .....	66
參考文獻 .....	68

附錄 I. 우리나라 租稅體系의 變遷 .....	73
附錄 II. 『稅務統計年報』의 變遷過程(1961~1965) .....	94
附錄 III. 『國稅統計年報』의 變遷 .....	96
附錄 IV. 地方稅 資料의 變遷 .....	115
附錄 V. 主要國의 租稅關聯 統計資料 .....	163

# 表 目 次

〈表 II - 1〉 國稅 關聯資料의 沿革	12
〈表 II - 2〉 地方稅 關聯資料의 沿革	12
〈表 II - 3〉 租稅 關聯資料集의 種類	13
〈表 II - 4〉 所得稅 資料의 內容 變遷	15
〈表 II - 5〉 法人稅 資料의 內容 變遷	17
〈表 II - 6〉 法人區分의 變化	18
〈表 II - 7〉 法人의 業態區分 變化	18
〈表 II - 8〉 資產再評價稅 資料의 變遷過程	20
〈表 II - 9〉 資產再評價稅 資料에서 法人區分의 變化	20
〈表 II - 10〉 證券去來稅 資料의 變遷過程	21
〈表 II - 11〉 附加價值稅 資料의 變遷過程	22
〈表 II - 12〉 附加價值稅의 業種別 區分基準의 變化	23
〈表 II - 13〉 特別消費稅 資料의 變遷過程	24
〈表 II - 14〉 特別消費稅 附課對象인 財貨區分의 年度別 變遷過程	25
〈表 II - 15〉 酒稅 資料의 變遷過程	29
〈表 II - 16〉 相續稅 資料의 變遷過程	30
〈表 II - 17〉 相續財產 種類의 變遷過程	31
〈表 II - 18〉 贈與稅 資料의 變遷過程	33
〈表 II - 19〉 地方稅 資料의 變化	34
〈表 III - 1〉 『國稅統計年報』의 稅目別 페이지 數의 變化	38
〈表 III - 2〉 國稅負擔率과 國稅情報量 間의 關係	40
〈表 III - 3〉 『國稅統計年報』에 收錄된 內容의 變化	42
〈表 III - 4〉 『地方稅政年鑑』의 分量 變化(1979~1994)	44

〈表 Ⅲ-5〉各國의 租稅 關聯 統計資料 比較 .....	48
〈表 Ⅳ-1〉『國稅統計年報』에 收錄하여야 할 內容 .....	53
〈表 Ⅳ-2〉『國稅統計年報』30年間 誤謬資料의 數 .....	54
〈表 Ⅳ-3〉『地方稅政年鑑』에 나타난 誤謬 .....	55

## 圖 目 次

[圖 Ⅲ-1] 『國稅統計年報』의 總計 페이지 數 變化 (1965~1994) .....	39
[圖 Ⅲ-2] 『國稅統計年報』의 稅目別 페이지 數 變化 (1965~1994) .....	39
[圖 Ⅲ-3] 國稅負擔率의 推移 .....	40
[圖 Ⅲ-4] 賦課·徵收 實績 .....	45
[圖 Ⅲ-5] 財產稅(賦課)의 分量 變化 .....	45
[圖 Ⅲ-6] 地方稅 負擔率의 推移 .....	46

## I. 序 論

국가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여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을 때는 정부는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진다. 선진국에서는 資料生産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情報公開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稅法改正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정책안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수준은 매우 직관적이었다.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조세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조세 관련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조세 관련자료로는 매년 발행하는 국세 관련 통계자료인 국세청의 『國稅統計年報』와 지방세 관련자료인 내부부의 『地方稅政年鑑』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세분야의 기초자료로서 정책평가 및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 관련 연구

---

1) 통계자료에 대한 OECD 국가들의 관심과 생산하는 통계자료의 종류에 대한 연구로 尹昌仁(1995)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나 정책입안자들은 이들 자료가 수록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國稅統計年報』는 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조세 관련 연구에 꼭 필요한 소득계층별 자료, 비과세 감면자료 및 제납액 등과 같은 내용은 삭제되었고, 세목별 징수액 위주의 통계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基礎資料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科學的인 租稅政策의 評價를 위해 개인 및 법인별 신고 자료를 일정비율로 無作爲 抽出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sup>2)</sup>. 個人別 徵視資料를 사용할 경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귀중한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및 법인별 신고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조세 관련 실증연구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의 평가를 직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조세 관련자료인 『國稅統計年報』와 『地方稅政年鑑』을 중심으로 이들에 수록된 정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 아울러 활발한 조세 관련 연구와 과학적인 정책 평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조세 관련자료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조세 관련자료의 체계와 『國稅統計年報』와 『地方稅政年鑑』의 수록내용이 발간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세목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제Ⅲ장에서는 연도별로 변천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제Ⅳ장에서는 현행 조세 관련자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며,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짓는다.

2) 미국의 경우 개인 및 법인별 신고자료는 일정비율을 표본추출하여, 의회와 행정부에서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羅城麟·玄鎮權(1993)을 참조하기 바란다.

## II. 租稅 關聯資料 體系의 變遷

### 1. 租稅 關聯資料의 種類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세 관련자료의 체계는 각 시대의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국세 및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附錄 I>에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租稅體系의 變遷過程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간단히 요약하였다. 이러한 정보와 연계하여야 조세 관련자료 체계의 변천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각각 달라 자료생산도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國稅統計年報』와 내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地方稅政年鑑』이 조세 관련자료로서는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다. 먼저 국세와 관련한 자료의 연혁을 살펴보면 <表 II-1>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와 관련된 자료를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1951년이며, 국세청이 발족하기 전으로 재무부 사세국에서 『稅務統計年報』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sup>3)</sup>. 이후 『稅務統計年報』는 15년 동안 매년 발간되다가, 국세청이 1966년 설립된 이후로 『國稅統計年報』가 발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3) 1958년 이전에는 『大韓民國 稅務統計書』라는 제목하에 발간되었다. 『稅務統計年報』는 1962년까지는 귀속연도를 중심으로 연도를 표시하였으나, 1964년 이후부터는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즉 1962년의 통계치는 1962년으로 되어 있으나, 1963년의 통계치는 1964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1963년도 『稅務統計年報』는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表 II - 1〉 國稅 關聯資料의 沿革

	1951~1965년	1966년 이후
서 명	『세무통계연보』	『국세통계연보』
발행기관	재무부사세국	국세청

지방세 관련자료는 현재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地方稅政年鑑』이 핵심적인 자료이며, 이 자료의 연혁을 살펴보면 〈表 II - 2〉와 같다. 내무부 자료는 1964년에 『地方稅務統計年報』라는 제목하에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며, 이후 세 차례 이름이 변경되고 1978년에 오늘의 『地方稅政年鑑』에 이르고 있다.

〈表 II - 2〉 地方稅 關聯資料의 沿革

	1964~1967년	1968~1971년	1972~1977년	1978년 이후
서 명	『지방세무통계연보』	『지방세통계연보』	『지방세통계』	『지방세정연감』
발행처	내무부			

『國稅統計年報』와 『地方稅政年鑑』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조세 관련자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통계자료들은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관련자료를 재생산하고 있다. 〈表 II - 3〉은 현재 각 기관에서 조세 관련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主要稅務統計』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식적인 간행물이며,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主要稅務統計』는 재정경제원의 세제실에서 세목별로 편찬한 것으로 공식적인 간행물이 아니라, 업무참고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자료집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세 관련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sup>4)</sup>.

〈表 II - 3〉 租稅 關聯資料集의 種類

자료명	발행기관	발행주기	발행연도	비 고
『재정금융통계』	재정경제원 국민저축과	격월간	1982~	발행초기에는 월간
『조세개요』	재정경제원 세제실	연간	1980년대 <sup>1)</sup>	
『재정통계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단행본	1983, 91, 94, 96	
『재정관련통계집』	재정경제원 예산실	연간	1985~	
『주요세무통계』	재정경제원	수시		내부자료

註 : 1) 『조세개요』는 초기에 내부용 참고자료로 사용되어 공개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 후반에 와서 공식적으로 발행되었다.

## 2. 國稅 關聯資料의 變遷過程

현재 국세 관련자료로는 국세청에서 연간 발간하는 『國稅統計年報』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총괄, 직접국세, 간접국세, 징수,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직접국세는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로 나뉘어 있고, 간접국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로 나뉘어져 있다. 『國稅統計年報』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국세 관련 기초 자료로서 국세 관련 연구 및 분석에 매우 중요하나, 수록되어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國稅統計年報』는 국세청이 발족한 1966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으며, 30년간 발간되면서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國稅統計年報』가 수록하였던 정보의 양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 관련자료는 1951~1965년까지의 『稅務統計年報』와 1966년 이후의 『國稅統計年報』자료가 중심이 된다. 이들 자료의 내용과 변천과정

4)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983년에 발간한 『財政統計資料集』은 세제실의 세목별 자료를 많이 인용하였다.

을 살펴보고도 록 한다. 『稅務統計年報』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196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66년에 발간된 『國稅統計年報』의 내용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준다<sup>5)</sup>. 여기에서는 『國稅統計年報』를 중심으로 수록한 자료의 종류와 내용의 변천사를 살펴보고도 록 한다.

### 가. 所得稅

〈表 II-4〉는 귀속연도를 중심으로 1965년부터 현재까지 소득세 자료의 종류와 내용의 변천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표〉를 통해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國稅統計年報』가 발행된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간이 감에 따라 내용이 감소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5년부터 1968년 동안에 수록된 내용이 가장 자세함을 알 수 있다. 징수의 경우 시도별에 관한 정보는 1986년부터 포함하지 않아, 지역별 분석이 어렵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득내역별 납세자에 관한 내용과 소득계급별 산출세액에 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계급별 자료는 납세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에 관한 연구가 제한받게 되었다. 그의 소득계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로서 납액계급별 소득세, 사업소득세신고 및 과세현황, 업종별 사업소득세, 업종별 소득표준을 조정 등과 같은 정보는 과거에는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삭제되었다.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정보는 1986년까지 포함되었으나 1987년 이후부터 삭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액에 대한 정보를 잃게 되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5) 1950년대의 『稅務統計年報』는 구하지 못했으므로 전체적인 변천사를 고찰할 수 없었다. 〈附錄 II〉에서는 1960년대의 『國稅統計年報』에 나타난 내용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表 II-4〉 所得稅 資料의 內容 變遷

	1965	1966	1969	1970	1971	1972	1974	1975	1976	1983	1984	1986	1987
예산	○	○	○	○	○	○	○	○	○	○	○	○	○
부과	○	○	○	○	○	○	○	○	○	○	○	○	○
-소득세부과(총괄)	○	○	○	○	○	○	○	○	○	○	○	○	X
-소득세부과(정기분)	○	○	○	○	○	○	○	○	○	○	○	○	X
-소득세부과(수시분)	○	○	○	○	○	○	○	X	X	X	X	X	X
징수	○	○	○	○	○	○	○	○	○	○	○	○	○
-월별	○	○	○	○	○	○	○	○	○	○	○	○	X
-시도별	X	X	X	X	○	○	○	○	○	○	○	X	X
납세자수	○	○	○	○	○	○	○	○	○	○	○	○	○
-소득내역별 인원수(정기분)	○	○	○	○	○	X	X	X	X	X	X	X	X
-소득내역별 인원수(수시분)	○	○	X	X	X	X	X	X	X	X	X	X	X
가장의무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X	X	X	X	X	X	X	X	X	○	○	○	○
종합소득세 결정유형별 신고	X	X	X	X	X	X	X	X	X	X	X	X	○
소득세 원천징수 <sup>1)</sup>	○	○	○	○	○	○	○	○	○	○	○	○	○
소득계급별 산출세액													
-부동산소득	○	○	○	○	○	○	○	○	X	X	X	X	X
-사업소득	○	○	○	○	○	○	○	○	X	X	X	X	X
-갑종근로소득	○	○	○	○	○	○	○	X	X	X	X	X	X
-을종근로소득	○	○	○	○	○	○	○	X	X	X	X	X	X
-종합소득세	X	X	○	○	○	○	○	○	○	○	○	○	○
-퇴직소득	X	X	X	X	X	X	X	X	○	○	○	○	X
-양도소득	X	X	X	X	X	X	X	X	○	○	○	○	X
-상업소득	X	X	X	X	X	X	X	X	○	○	○	○	X
남액계급별 소득세	○	○	○	X	X	X	X	X	X	X	X	X	X
사업소득세신고 및 과세현황	○	○	○	○	○	○	X	X	X	X	X	X	X
업종별 사업소득세(정기분)	○	○	○	○	○	X	X	X	X	X	X	X	X
업종별 소득표준율 조성	X	X	X	X	X	X	X	X	X	X	X	X	○
감면 <sup>2)</sup>	○	○	○	○	○	○	○	○	○	○	○	○	X
국세심사 사무처리													
-재조사분(이의신청)	○	○	○	○	○	○	○	○	○	○	○	○	○
-심사분	○	○	○	○	○	○	○	X	X	X	X	X	X
-재심사분(심사청구)	○	○	○	○	○	○	○	○	○	○	○	○	○
소송	○	○	○	○	○	○	○	○	○	○	○	○	○
감사	X	X	○	○	○	○	○	○	○	○	○	○	○

註 : ○는 자료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1) 소득세 원천징수분

2) 감면 1965~1986 소득세 정기분 감면자료(사업소득세 포함)

1965~1974 소득세 수시분 감면자료(사업소득세 포함)

1965~1971 사업소득세 감면자료

1972~1983 소득세 감면자료

이상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1987년부터 소득세 자료가 가지는 정보는 예년에 비해 매우 감소하여 현재의 『國稅統計年報』에 이르고 있다. 즉 소득세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國稅統計年報』는 납세자의 소득내역, 소득계급에 따른 분포, 감면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소득세 분야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 나. 法人稅

〈表 II-5〉는 귀속연도를 중심으로 법인세 자료의 내용에 대한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발간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정보를 수록하였으나, 시간이 감에 따라 수록하는 정보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징수에 있어서 월별 및 시도별 자료가 최근에 없어져 지역적인 차이를 규명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인수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소득금액별, 납액계급별, 내역별로 구분한 정보가 초기에는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없는 실정이다. 반면 결산기별, 자본금 규모별, 외형규모별 분포에 대한 정보는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포함하고 있다. 즉 소득 및 납세액과 관련된 소득계층간 법인의 분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어지고, 법인규모를 파악하는 자료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法人稅 減免資料의 경우 1983년까지는 공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삭제되어 법인단체에서의 감면에 관한 정보는 구할 수 없게 되었다.

〈表 II-6〉은 법인세 자료에서 법인을 구분한 기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현재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 자료를 구분하였으나, 이전에는 매우 세밀하게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表 II-7〉은 업종별 구분기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현재의 기준은 1975년부터 분류된 것으로 예년에 비해 업종분류가 짐계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업·보험업의 경우 예년에는 세밀하게 업종을 분류하였으나, 지금은 대분류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법인세 자료는 초기에는 비교적 세분화하여 정보를 가졌으나, 점차로 몇 개의 그룹으로 집계되어 『國稅統計年報』를 통해서 법인세를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表 II-5〉 法人稅 資料의 內容 變遷

	1965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5	1982	1984	1986	1987	1989
예산	○	○	○	○	○	○	○	○	○	○	○	○	○	○
부과	○	○	○	○	○	○	○	○	○	○	○	○	○	○
징수	○	○	○	○	○	○	○	○	○	○	○	○	○	○
-월별	○	○	○	○	○	○	○	○	○	○	○	○	○	○
-시도별	X	X	X	X	X	○	○	○	○	○	○	X	X	X
법인수														
-소득금액 계급별	○	○	○	○	○	○	○	○	○	○	○	○	X	X
-납액계급별	○	○	○	○	○	○	○	○	○	○	○	○	X	X
-내역별	○	○	X	X	X	X	X	X	X	X	X	X	X	X
-법인종류별	X	○	○	○	○	○	○	○	○	○	○	○	○	○
-가동법인·휴업법인	X	○	X	X	X	X	X	X	X	X	X	X	X	X
-사업연도별	X	○	X	X	X	X	X	X	X	X	X	X	X	X
-결산기별	X	X	X	X	X	X	X	X	X	X	○	○	○	○
-자본규모별	X	X	X	X	X	X	X	X	X	X	○	○	○	○
-외형규모별	X	X	X	X	X	X	X	X	X	X	○	○	○	○
-업태별	X	X	○	○	○	○	○	○	○	○	○	○	○	○
자진납부	○	○	○	○	○	○	X	X	X	X	X	X	X	X
총괄	○	○	○	○	○	○	○	○	○	○	○	○	○	○
확정사업연도 조사결정분	○	○	○	○	○	○	○	○	○	○	○	○	○	○
청산소득 및 수시부과	○	○	X	X	X	X	X	X	X	X	X	X	X	X
원천징수	○	○	○	○	○	○	X	X	X	X	X	X	X	X
중간예납	○	○	X	X	X	X	X	X	X	X	X	X	X	X
감면	○	○	○	○	○	○	○	○	○	○	○	○	○	○
국세환급	X	X	X	X	X	X	X	X	X	X	X	X	○	○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분(재조사분)	○	○	○	○	○	○	○	○	○	○	○	○	○	○
-심사청구분(재심사분)	○	○	○	○	○	○	○	○	○	○	○	○	○	○
-심사분	○	○	○	○	○	○	○	○	X	X	X	X	X	X
세부소송	○	○	○	○	○	○	○	○	○	○	○	○	○	○
감사	X	X	X	○	○	○	○	○	○	○	○	○	○	○

註: 1.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2. 자본규모별, 외형규모별, 결산기별 법인수는 1983년 자료부터 있음.

〈表 II -6〉 法人區分の變化

	1965~1967	1968~1969	1970~1974	1975~1981	1982~1994
법 인 종 류	-일반 -특별 -공익 -외국	-공개 -비공개 -비영리 -외국	-영리 ○녹색 ○공개 ○일반 -비영리 ○녹색 ○일반 -외국법인	-영리 ○녹색 ○공개 ○일반 -비영리 ○녹색 ○일반	-영리 -비영리

〈表 II -7〉 法人의 業態區分 變化

	1968~1971	1972~1974	1975~1994
수산업	○	○	○
광산업	○	○	○
제조업	○	○	○
건설업	○	○	○
전기가스업	○	X	X
전기·가스·수도업	X	X	○
도매업	○	X	○
소매업	○	X	○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	○	○	
-부동산대부업	○		
-부동산임대업		○	
금융업, 보험업			○
-금융업	○	○	
·은행	X	○	
·신탁	○	○	
·무진	○	○	
·대금 및 어음할인	X	○	
·기타	X	○	
-보험업	○	X	
전당포업	○	X	X

〈表 II-7〉의 계속

	1968~1971	1972~1974	1975~1994
운송보관업	○	○	○
캐도업	○	X	X
-오락서비스업	○		
-음식점업	○		
-요리점업	○		
-음식, 숙박업			○
-음식점 및 기타서비스		○	
-요리점 및 기타서비스		○	
목욕, 이발, 미용업	○	○	X
서비스업	X	X	○
기타 서비스업	○	X	X
판매업	X	○	X
산림업	X	○	○
축산업	X	○	○
의료업	X	○	○
기타사업	○	○	○

註: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 다. 資産再評價稅

〈表 II-8〉은 자산재평가세 자료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징수와 관련한 자료의 경우, 월별 자료는 1987년부터 삭제되었고, 시도별 자료는 1986년부터 삭제되어 월별 및 지역별 분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재평가 세액별로 법인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1973년부터 삭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재의 『國稅統計年報』가 가지고 있는 자산재평가세 관련 정보의 양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表 II - 8〉 資産再評價稅 資料의 變遷過程

	1965~70	1971	1972	1973	1975	1978	1981	1986	1987
예산	○	○	○	○	○	○	○	○	○
부과	○	○	○	○	○	○	○	○	○
징수	○	○	○	○	○	○	○	○	○
-월별	○	○	○	○	○	○	○	○	X
-시도별	X	○	○	○	○	○	○	X	X
법인수	○	○	○	○	○	○	○	○	○
-재평가액 및 재평가 세액별 법인수	○	○	○	X	X	X	X	X	X
자산재평가세(부과)	○	○	○	○	○	○	○	○	○
재평가 산출세액	○	○	○	○	○	○	○	○	○
자산종류별 재평가액	○	○	○	○	○	X	○	○	○

註: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 표시함.

〈表 II - 9〉는 자산재평가세 자료에서 법인구분의 변천과정을 나타낸다. 현재 법인구분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表 II - 9〉 資産再評價稅 資料에서 法人區分의 變化

	1965~1969	1970~1974	1975~1978	1979~1994
법인구분	-내국법인 -외국법인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개인

#### 라. 證券去來稅

〈表 II - 10〉은 증권거래세 자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정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각 연도별로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비교해 볼 때 1984~1985년 동안에 발간

된 자료가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현재의 자료는 월별 및 시도별 징수에 관한 정보가 빠져 있으며, 대체로 예년에 비해 정보의 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表 II - 10〉 證券去來稅 資料의 變遷過程

	1965~1970	1979~1983	1984~1985	1986	1987~1994
예산	○	○	○	○	○
부과	○	○	○	○	○
징수					
-월별	○	○	○	○	X
-시도별	X	○	○	X	X
납세자수	X	○	○	○	○
감사	X	X	○	○	○

註：○는 자료 있음을,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 마. 附加價値稅

부가가치세는 1977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表 II - 11〉은 부가가치세 자료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항목별로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징수의 경우 현재의 자료는 월별, 시도별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거에 비해 세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경우, 지방별로 구분한 정보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감면자료는 1978년 이후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자료는 다른 세목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른 세목처럼 정보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表 II - 12〉는 부가가치세에서 업종별 구분기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현재 업종의 구분은 부동산 관련업종이 예년에 비해 세분화되어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음식업·숙박업도 구분하

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업종별 구분에 따른 정보는 비교적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어, 시대에 따른 업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表 II - 11〉 附加價値稅 資料의 變遷過程

	1977	1978	1983~1985	1986	1987	1988	1989	1990~1993
예산	○	○	○	○	○	○	○	○
부과	○	○	○	○	○	○	○	○
징수	○	○	○	○	○	○	○	○
-월별	○	○	○	○	X	X	X	X
-시도별	○	○	○	X	X	X	X	X
-월별수입제세	○	○	○	○	X	X	X	X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1) 일반과세자, 과세특례자	○	○	○	○	○	○	○	○
2) 개인, 법인	X	X	○	○	○	○	○	○
3) 지방국세청별	X	X	X	X	○	○	○	○
납부 및 환급								
1) 연도별	X	X	○	○	○	○	○	○
2) 과세기간별	X	X	○	○	○	○	○	○
부가가치율	X	X	○	○	○	○	○	○
경정 현황	X	X	○	○	○	○	○	○
부가가치세 신고								
1) 업태별								
-일반과세자	○	○	○	○	○	○	○	○
-개인, 법인	X	X	X	X	○	○	○	○
-과세특례자	○	○	○	○	○	○	○	○
2) 지방별								
-일반과세자	○	○	○	○	X	X	X	X
-개인, 법인	X	X	X	X	X	X	X	X
-과세특례자	○	○	○	○	X	X	X	X
면세사업자								
1) 업태별	X	X	X	X	X	X	○	○
2) 지방국세청별	X	X	X	○	○	○	○	○
3) 업태별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결정	X	X	X	○	○	X	X	X
감면	○	X	X	X	X	X	X	X
국세심사								
1) 이의신청	○	○	○	○	○	○	○	○
2) 심사청구	○	○	○	○	○	○	○	○
소송사건	○	○	○	○	○	○	○	○
감사	○	○	○	○	○	○	○	○

註 :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表 II - 12〉 附加價值稅의 業種別 區分基準의 變化

업 태	1977~1978	1979~1980	1981~1993
농업·수렵·임업·어업	○	○	○
광업	○	○	○
제조업	○	○	○
전기·가스·수도업	○	○	○
도매업	○	○	○
소매업	○	○	○
부동산매매업	○	○	○
부동산임대업	×	×	○
건설업	○	○	○
음식업·숙박업	○	×	×
-음식업	×	○	○
-숙박업	×	○	○
운수·창고·통신업	○	○	○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	×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	○

註 :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 바. 特別消費稅

〈表 II - 13〉은 1977년 이후 특별소비세 자료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징수액 자료를 살펴보면 월별 및 시도별 자료를 현재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연도별 감면액에 대한 자료는 1984년 이후부터 삭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특별소비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역사가 짧아 자료량에는 커다란 偏差를 보이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 소비하는 奢侈財 性格의 재화에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재화별 세수규모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表 II - 14〉는 특별소비세 부가대상인 재화구분의 연도별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은 네 가지의 물품과 서비스장소로 나뉘어진

다. 제1종의 경우, 현재의 구분은 예년과는 투전기 및 오락품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2종의 경우, 1978년 이전까지는 승용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현재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 세밀히 구분된 정보를 보여준다. 제3종의 경우는 주로 음료 관련물품으로서 지금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사치재의 성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자세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제4종의 경우도 제3종의 경우와 같이 지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많으므로 구분이 예년에 비해 덜 세분화되었다. 과세장소의 경우, 고급유흥장에 대한 구분은 1981년까지는 없었으나, 1982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우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와서는 카바레 등과 같은 고급유흥장의 구분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액수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료를 통해서는 고급 유흥장의 종류에 따른 稅收規模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表 II - 13〉 特別消費稅 資料의 變遷過程

	1977	1978~1983	1984~1985	1986	1987~1994
연도별 특별소비세 예산	○	○	○	○	○
연도별 특별소비세 부과	○	○	○	○	○
연도별 특별소비세 징수	○	○	○	○	○
- 월별	○	○	○	○	X
- 시도별	○	○	○	X	X
- 월별 수입제세	○	○	○	○	X
연도별 특별소비세 납세자수	○	○	○	○	○
연도별 주요품목별 출고량 및 특소세 부과	X	X	X	X	○
연도별 제세 품목별 특별소비세 부과	○	○	○	○	○
연도별 특소세 감면	○	○	X	X	X
기타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	○	○	○
세무소송	○	○	○	○	○
감사	X	○	○	○	○

註 :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表 II - 14〉 特別消費稅 附課對象인 財貨區分의 年度別 變遷過程

(1)

제1종	1977~1983	1984~1993	1994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	○	○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	○	○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	○
귀금속제품	○	○	○
모피와 동 제품	○	○	○
투전기와 오락용 사행기구	X	○	○
투전기	○	X	X
오락용 사행기구	○	X	X
당구용품	○	○	X
골프용품	○	○	○
수렵용 총포류	○	○	○
가구	○	○	○
특수화장품	○	○	○

註: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表 II - 14〉의 계속

(2)

제2종	1977~1978	1979~1981	1982~1993	1994
공기조절기	○	○	○	○
동 부분품 및 부속품	○	○	○	○
냉장고	○	○	○	○
전기세탁기	○	○	○	○
텔레비전 수상기	○	○	○	○
축음기	○	○	○	○
녹음기	○	○	○	○
가스전열이용기구	○	○	○	○
승용자동차(1500cc 이하)	○	○	○	○
이륜자동차	○	○	○	○
사륜구동지프형	○	○	○	X
지프형의 승용자동차	X	X	X	○
승용자동차(1500~2000cc 이하)	○	○	○	○
승용자동차(2000cc 이하 6기통 이상)	X	○	○	X
승용자동차(2000cc 초과)	○	○	○	○
캠핑용자동차	X	○	○	○
모타보트와 요트	X	○	○	○
동 관련제품	X	○	○	○
설상스쿠터와 수상스키용품	X	○	○	X
그랜드피아노	X	○	○	○
기타피아노	X	○	○	○
고급시계	X	○	○	○
TV영상음향기록기	X	○	○	○
동 관련제품	X	○	○	○
영사기·촬영기	X	○	○	○
사진기	X	○	○	○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X	X	○	○
크리스탈 유리제품	X	X	○	○
설상스키용품	X	X	X	○
분령용구	X	X	X	○

註：○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表 II-14〉의 계속

(3)

제3종	1977~1978	1979~1981	1982~1993	1994
커피와 코코아	○	○	○	○
카카오마스	X	X	○	○
사탕	○	○	○	○
전분당	X	X	○	X
청량음료	○	○	○	○
기호음료	○	○	○	○
빙과류	○	○	○	X
발효유	X	○	○	X
자양강장품	X	X	○	○
자양강장품(정제의 것)	○	○	X	X
자양강장품(기타의 것)	○	○	X	X
천연과실음료	X	X	○	X

(4)

제4종	1977~1981	1982~1992	1993	1994
소모사	○	○	X	X
방모사	○	○	X	X
소모직물	○	○	X	X
방모직물	○	○	X	X
융단	○	○	X	X
융단(모제품의 것)	X	X	○	○
융단(기타의 것)	X	X	○	○
휘발유	○	○	○	○
대체휘발유	X	○	○	X
경유	○	○	○	○
등유	X	X	X	○
액화석유가스	X	○	○	○
천연가스	X	X	X	○

〈表 II - 14〉의 계속

(5)

과세장소 및 유흥장	1977~1981	1982~1993	1994
경마장	○	○	○
터키탕	○	○	○
부전기류 시설한 장소	○	○	○
골프장	○	○	○
카지노(내국인)	○	○	○
카지노(외국인)	○	○	○
스키장	X	○	○
카바레	X	○	X
나이트클럽	X	○	X
요정	X	○	X
유흥음식주점	X	X	○
외국인 전용음식점	X	○	○
이와 유사한 장소	X	○	X

註: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 사. 酒稅

〈表 II - 15〉는 1965년 이후부터 발간된 주세 자료의 변천과정을 보여 준다. 徵收資料의 경우는 월별 및 시도별 자료가 예년에는 수록되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반면 주요 주류출고와 주류판매장 면허장 수에 대한 정보는 1986년까지 없었으나 1987년부터 수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減免資料의 경우는 1983년까지는 수록되었으나, 1984년 이후부터 삭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범칙에 대한 정보도 1992년부터 삭제하였고, 국세심사 사무처리의 심사분 자료는 1975년부터 삭제하였다. 감사에 대한 정보는 1979년부터 삭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세에 관한 자료는 지역별 징수실적, 감면 등과 같은 정보는 삭제되었으나, 주류별 출고와 면허장 수 등과 같은 정보는 더욱 풍부해졌다.

〈表 II - 15〉 酒稅 資料의 變遷過程

	1965~68	1969~70	1971	1972	1973	1975	1979~83	1984~85	1986	1987~91	1992~93
예산	○	○	○	○	○	○	○	○	○	○	○
부과	○	○	○	○	○	○	○	○	○	○	○
징수	○	○	○	○	○	○	○	○	○	○	○
-월별	○	○	○	○	○	○	○	○	○	X	X
-시도별	X	X	○	○	○	○	○	○	X	X	X
-월별 수입체제	X	X	○	○	○	○	○	○	○	X	X
납세자수	X	X	X	○	○	○	○	○	○	○	○
주류별 주세부과	○	○	○	○	○	○	○	○	○	○	○
주류제조면허장 수 <sup>1)</sup>	○	○	○	○	○	○	○	○	○	○	○
주요주류출고	X	X	X	X	X	X	X	X	X	○	○
주류판매장 면허장 수	X	X	X	X	X	X	X	X	X	○	○
감면 <sup>2)</sup>	○	○	○	○	○	○	○	X	X	X	X
국세환급	X	X	X	X	X	X	X	X	X	○	○
법칙 <sup>3)</sup>	○	○	○	○	○	○	○	○	○	○	X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재조사분)	○	○	○	○	○	○	○	○	○	○	○
-심사청구(재심사분)	○	○	○	○	○	○	○	○	○	○	○
-심사분 <sup>4)</sup>	○	○	○	○	○	X	X	X	X	X	X
소송	○	○	○	○	○	○	○	○	○	○	○
감사 <sup>5)</sup>	X	○	○	○	○	○	X	X	X	X	X

註 :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 1) 1965~1969년, 1993년 : 발효제 제조면허장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음.
- 2) 감면 : 1965~1971년, 1972~1983년 감면자료의 내용이 다름.
- 3) 법칙 : 1965~1966년 간접국세법칙, 법칙자에 대한 주세부와 현황, 주류밀조검 거건수, 간접국세법칙행위,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법칙검거건수  
1967년 간접국세법칙,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법칙검거실적, 부정주류검 거실적  
1976년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법칙검거, 부정주류 검거실적  
1987년 법칙유형별 부정주류적발, 법칙유형별 검거실적.
- 4) 국세심사사무처리 : 1965~1974년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  
1975~1993년 이의신청, 심사청구
- 5) 감사 : 1967~1972년 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감사  
1973년 지방국세청별 감사(세무서별 감사항목이 없어짐)

## 아. 相續稅

〈表 II-16〉은 상속세 자료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월별 및 시도별 징수자료는 예년에는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다. 또한 부과액계급별 납세자수에 관한 정보는 1980년부터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자료에서 심사분에 대한 정보 역시 1975년에 폐지되었다. 전체적으로 상속세 관련자료는 현재에 와서 지역별 및 계급별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중요한 정보의 양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表 II-16〉 相續稅 資料의 變遷過程

	1965	1969	1971	1975	1980	1986	1987	1991
예산	○	○	○	○	○	○	○	○
부과	○	○	○	○	○	○	○	○
징수	○	○	○	○	○	○	○	○
- 월별	○	○	○	○	○	○	X	X
- 시도별	X	X	○	○	○	X	X	X
납세자수	○	○	○	○	○	○	○	○
- 부과액계급별 인원수	○	○	○	○	X	X	X	X
상속세 과세상황	○	○	○	○	○	○	○	○
상속재산내역	○	○	○	○	○	○	○	○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	○	○	○	○	○	○
- 심사청구	○	○	○	○	○	○	○	○
- 심사분	○	○	○	X	X	X	X	X
세무소송	○	○	○	○	○	○	○	○
감사	X	○	○	○	○	○	○	○

註: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表 II-17〉은 상속재산 종류에 대한 구체적 분류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1990년 이전까지는 상속재산이 토지, 축조물, 금융자산일 경우 매

우 세분화되었으나, 1991년부터 세분화한 상속재산을 크게 토지, 축조물, 금융자산 등으로 대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정보는 1991년부터 삭제하였으며, 그 외의 무체재산권, 가계기구 재집기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한 정보는 모두 폐지하였다.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는 1991년을 변환점으로 그 이후로는 상속에 대한 정보를 대폭 삭제하여 서부적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表 II - 17〉 相續財産 種類의 變遷過程

	1965~81	1982~83	1984~86	1987~90	1991~94
토지					○
-전	○	○	○	○	
-답	○	○	○	○	
-대지	○	○	○	○	
-기타	○	○	○	X	
축조물					○
-건물	○	○	○	○	
-기타	○	○	○	○	
광산				○	X
-광업에 대한 권리	○	○	○		
-동 시설	○	○	○		
임목, 죽	○	○	○	○	X
차량	○	○	○	○	X
선박	○	○	○	○	X
금융자산					○
유가증권 및 출자의 가액					
-국채	○	○	○	○	
-지방채	○	○	○	○	
-사채	○	○	○	○	
-주권	○	○	○	○	
-법인에 대한 출자	○	○	○	○	
-기타증권 및 출자	○	○	○	○	
통화와 예금					
-통화예금	○	○	○	○	
-은행예금	○	○	○	○	
-신탁예금	○	X	○	○	
-우편예금	○	○	○	○	
-기타예금	○	○	○	○	

〈表 II - 17〉의 계속

	1965~81	1982~83	1984~86	1987~90	1991~94
채권					X
-의상대출금	○	○	○	○	
-대부금	○	○	○	○	
-기타채권	○	○	○	○	
무체재산권	○	○	○	○	X
가계기구 제집기	○	○	○	○	X
상품제품과 곡물	○	○	○	○	X
생명보험금	○	○	○	○	X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	○	○	○	X
기타 상속재산	○	○	○	○	○

註 :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 자. 贈與稅

〈表 II - 18〉은 증여세 자료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월별 및 시도별 징수에 관한 정보는 현재 삭제되었으며, 계급별 납세자 수에 관한 정보는 1980년부터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예년에는 지역별 및 계급별 자료가 파악되었으나, 현재 『國稅統計年報』 자료는 이를 모두 삭제하여 정보의 양이 대폭 줄어들었다. 증여재산 내역에 대한 자료는 초기에는 포함하였으나, 1968년부터 삭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세심사 사무처리의 심사분 자료도 1975년부터 삭제되었다. 반면 감사에 대한 정보는 초기단계에는 없었으나, 1969년부터 포함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증여세에 관한 정보는 지역별, 계급별, 재산내역별과 같은 중요한 자료는 모두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 II - 18〉 贈與稅 資料의 變遷過程

	1965	1968	1969	1971	1975	1980	1986	1987	1991
예산	○	○	○	○	○	○	○	○	○
부과	○	○	○	○	○	○	○	○	○
징수	○	○	○	○	○	○	○	○	○
- 월별	○	○	○	○	○	○	○	X	X
- 시도별	X	X	X	○	○	○	X	X	X
납세자수	○	○	○	○	○	○	○	○	○
- 부과액계급별 인원수	○	○	○	○	○	X	X	X	X
증여세 과세상황	○	○	○	○	○	○	○	○	○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부과	X	○	○	○	○	○	○	○	X
증여재산내역	○	X	X	X	X	X	X	X	X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	○	○	○	○	○	○	○
- 심사청구	○	○	○	○	○	○	○	○	○
- 심사분	○	○	○	○	X	X	X	X	X
세무소송	○	○	○	○	○	○	○	○	○
감사	X	X	○	○	○	○	○	○	○

註 : ○는 자료 있음, ×는 자료가 없음을 표시함.

### 3. 地方稅 關聯資料의 變遷過程

지방세 관련자료는 내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地方稅政年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내무부의 지방세 관련자료는 1964년부터 발간했으며, 몇 차례의 서명을 변경하고서 현재의 『地方稅政年鑑』에 이르고 있다<sup>6)</sup>.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발행한 지방세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정보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6) 1964년도의 『地方稅務統計年報』에는 1962년과 1963년 귀속연도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960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세는 수차례의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정 세목이 폐지되거나 새로 지방세로 도입됨에 따라 모든 세목의 자료를 연속적으로 고찰할 수는 없다. 귀속연도를 중심으로 1967년부터 1994년까지의 지방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살펴보면 국세 관련자료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볼 수는 없다. 지방세의 각 세목별로 정보의 종류와 양을 살펴보면 <附錄 Ⅳ>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변화를 보일 뿐, 정보 자체의 삭제 및 추가와 같은 변화는 매우 드물었다. 지방세 자료의 커다란 변화는 <表 Ⅱ-1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귀속연도를 중심으로 1977년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실적의 시도별 및 세목별 자료가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4년에는 세목별 및 시도별 체납액 자료와 1가구 2차량 중과세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었다.

<表 Ⅱ-19> 地方稅 資料의 變化

연 도	추 가 사 항
1977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실적
1994	세목별 체납액 1가구 2차량 중과세 현황

지방세 자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세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현재 『地方稅政年鑑』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양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國稅統計年報』와의 차이점으로 국세관련정보는 계층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대신, 지방세 관련자료는 계층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 Ⅲ. 租稅 關聯資料 體系의 評價

앞장에서 조세 관련정보의 내용과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조세 관련정보의 내용과 質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평가해 본다.

#### 1. 國稅 關聯資料의 評價

『國稅統計年報』는 귀속연도 기준으로 1965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록하고 있는 내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행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으나, 점차로 정보의 내용을 축소하는 경향을 모든 세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 『國稅統計年報』에서 수록한 내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연도별 『國稅統計年報』의 페이지 수를 비교해 본다. 페이지 수가 조세관련 자료의 質을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분석하기에 가장 쉬운 자료이므로 간접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페이지 수를 사용한 분석은 자료체계의 과정을 計量化하여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페이지 수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체계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데 하나의 보조자료로 사용하여 추세파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表 Ⅲ-1〉은 귀속연도를 중심으로 1965년부터 1994년 동안 발간된 『國稅統計年報』의 페이지 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대표적인 세목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圖 Ⅲ-2]는 〈표〉의 결과를 세목별로 나눈 추세를 보여주며, [圖 Ⅲ-1]은 주요세목의 총 페이지 수의 변화를 나타낸

다. 발간 이후 1971년까지는 매년 페이지 수가 증가하여 1971년에는 273페이지라는 최대의 분량을 포함하였다. 1972년에는 절반 이상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05페이지였고,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87년에는 심한 감소 폭을 보여 총 74페이지가 되었고, 이후로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귀속연도 기준 1987년은 국세관련 정보가 대폭 감소하게 된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며, 이 변화 이후 현재의 『國稅統計年報』로 이어지고 있다. 이때에 많은 양의 국세 관련 정보가 삭제되었는데, 실제로 <表 Ⅲ-1>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정보량이 감소되었다. 즉 1987년부터는 대부분의 통계치를 과거 5년간의 자료를 수록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많은 양의 지면을 차지하게 되어 실제 자료의 내용을 비교하면 감소 폭은 훨씬 클 것이다.

세목별로 차지하고 있는 정보의 양을 비교해 보면 초기에는 소득세에 관한 정보의 양이 가장 많았고, 법인세, 소비세 순서였다. 이후 소득세 및 법인세 자료의 양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소비세 자료의 양은 1970년대 중반기에 변화를 가졌지만, 초기의 정보량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후, 현재의 정보량을 살펴보면 소비세 관련 정보의 양이 가장 많고, 소득세, 법인세 순서를 보여준다.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에 관한 정보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세 관련 정보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특징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의 경우 납세자들이 납세의 형식과 내용을 쉽게 인식하는 반면, 간접세는 납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納稅者의 認識度에 대해 과세당국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할 경우, 공급하는 정보의 양을 줄여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조세부담이 높아질수록 조세 관련 정보는 다양하고 풍부하게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圖 Ⅲ-3]은 1965~1994년간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세규모의 부담률을 보여준다.

1965년에 국세부담률이 7.34%에서 1994년에는 15.56%로 국세부담률이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민들의 국세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는 높아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세 관련자료는 『國稅統計年報』가 유일하며, 시간이 감에 따라 관련 정보의 양도 줄어들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國稅統計年報』의 페이지 수와 국세부담률을 이용한 다음의 回歸分析式을 사용한다.

$$(\text{정보량}) = \beta_0 + \beta_1 (\text{국세부담률}) \quad (1)$$

여기서  $\beta_1$ 은 국세부담률과 국세관련 자료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陰(-)의 값을 가지면 국민들의 국세부담률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國稅統計年報』의 전체 페이지 수와 세목별로 나눈 각 세목의 페이지 수를 사용하여 식 (1)을 분석한 결과는 <表 Ⅲ-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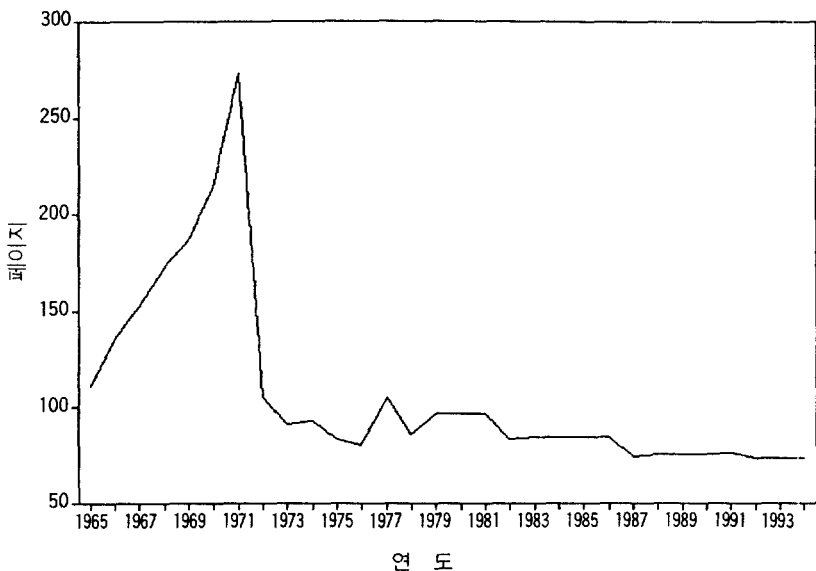
먼저 『國稅統計年報』의 전체 페이지 수와 국세부담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beta_1$ 의 추정치가 -2.72를 보여주나 統計的 有意性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경우는 추정치가 각각 -5.29, -3.6, 2.58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정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는 국세부담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정도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비세의 경우는 국세부담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의 양도 많아지는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국세의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국세 관련자료에 대한 양은 늘어나 납세자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國稅統計年報』에 수록된 자료의 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表 Ⅲ-1〉 『國稅統計年報』의 稅目別 페이지 數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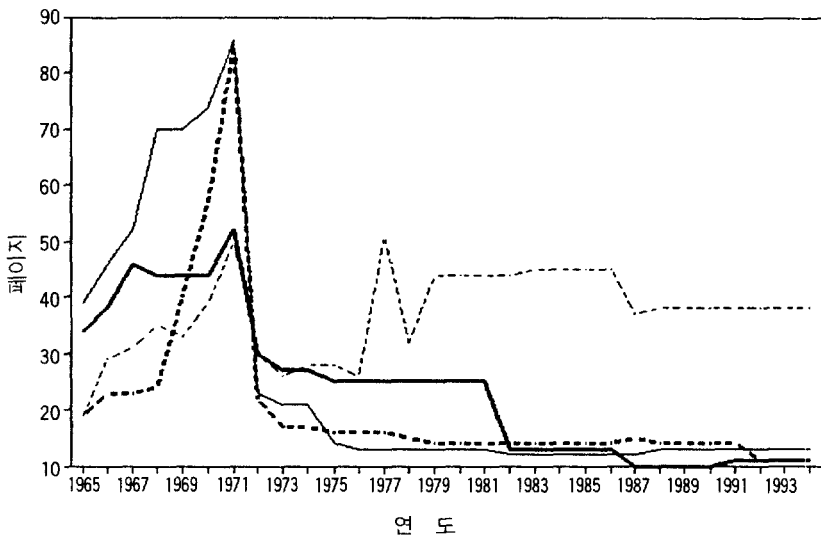
(單位: 페이지)

	총계	소득세	법인세	소 비 과 세				행정
				계	부가세	주세	특소세	
1965	116	39	34	19		5		19
1966	141	46	38	29		5		23
1967	160	52	46	31		7		23
1968	180	70	44	35		7		24
1969	192	70	44	33		5		40
1970	221	74	44	39		7		57
1971	280	86	52	50		7		85
1972	112	23	30	30		7		22
1973	96	21	27	26		5		17
1974	98	21	27	28		5		17
1975	88	14	25	28		5		16
1976	85	13	25	26		5		16
1977	135	13	25	51	21	5	4	16
1978	115	13	25	32	21	5	4	15
1979	134	13	25	44	28	6	6	14
1980	134	13	25	44	28	6	6	14
1981	134	13	25	44	28	6	6	14
1982	123	12	13	45	28	5	8	14
1983	123	12	13	45	28	5	8	14
1984	123	12	13	45	28	5	8	14
1985	123	12	13	45	28	5	8	14
1986	123	12	13	45	28	5	8	14
1987	108	13	10	37	17	8	10	15
1988	109	13	10	38	18	8	10	14
1989	109	13	10	38	18	8	10	14
1990	109	13	10	38	18	8	10	14
1991	110	13	11	38	18	8	10	14
1992	107	13	11	38	18	8	10	11
1993	107	13	11	38	18	8	10	11
1994	107	13	11	38	18	8	10	11

[圖 Ⅲ-1] 『國稅統計年報』의 總計 페이지 數 變化(1965~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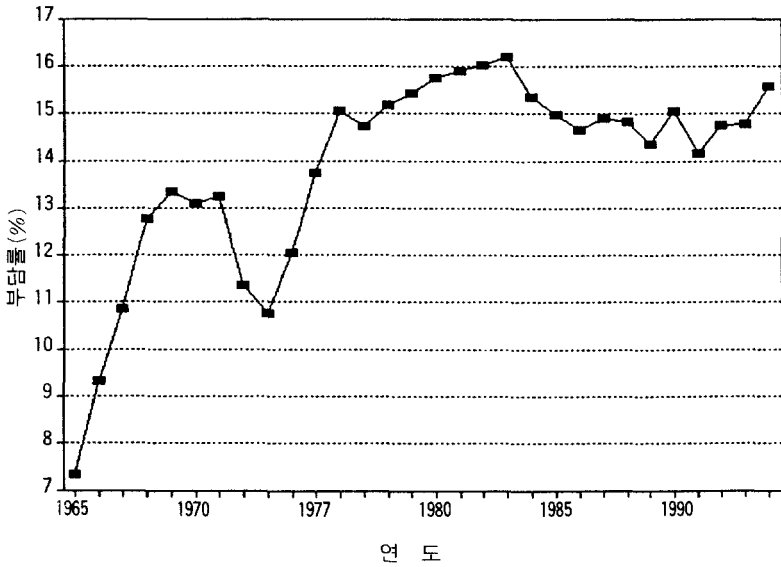


[圖 Ⅲ-2] 『國稅統計年報』의 稅目別 페이지 數 變化(1965~1994)



— 소득세    — 법인세    ..... 소비과세    ..... 행정

[圖 Ⅲ-3] 國稅負擔率의 推移



<表 Ⅲ-2> 國稅負擔率과 國稅情報量 間의 關係

국세통계연보	(정보량) = 168.11 - 2.72 (국세부담률), R <sup>2</sup> = 0.02 (t = -0.76)
소득세	(정보량) = 98.56 - 5.29 (국세부담률), R <sup>2</sup> = 0.25 (t = -3.06)
법인세	(정보량) = 73.53 - 3.60 (국세부담률), R <sup>2</sup> = 0.35 (t = -3.85)
소비세	(정보량) = 1.53 + 2.58 (국세부담률), R <sup>2</sup> = 0.49 (t = -5.20)

『國稅統計年報』에 수록된 내용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페이지 수를 통해서도 검증되었지만 『國稅統計年報』가 발행된 이후 몇 개년 동안은 비교적 내용이 풍부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용이 줄었다. 국세 관련자료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보로서 인식되고 있는 자료로는 소득계급별 세부담의 정도, 세목별 비과세 감면 실적자료, 지역별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조세자료가 소득관련 자료의 한 종류인 만큼 조세부담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조세개혁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며, 소득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조세정책에 의해 비과세 감면된 세수규모는 조세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이며, 이러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조세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또한 地域別 稅負擔의 差異는 지역의 형평성이 중요한 문제로 항상 제기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요긴한 기초자료가 된다. 체납액 자료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와 같은 행위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며, 또한 稅務行政의 效率性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이러한 자료는 국세관련 연구에서도 꼭 필요한 자료인 만큼 선진국의 통계자료에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國稅統計年報』에서 수록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초기에는 수록되었다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졌던 내용은 여러 종류이나, 국세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가를 살펴본다.

〈表 Ⅲ-3〉은 『國稅統計年報』가 수록한 내용 중에서 市道別 資料, 非課稅 減免資料, 所得階級別 資料만을 선정하여 시대별로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가를 세목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시도별 자료는 모든 세목에서 1971년부터 수록되었다가 1987년 이후로는 모두 폐지되었다. 비과세 감면자료의 경우는 세목별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1977년 대폭 개정된 소비과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의 비과세 감면에 관한 자료는 『國稅統計年報』가 발행된 때부터 수록되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1986년까지 지속되었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한 해만 감면자료를 수록하고 이후로

는 폐지하였다. 그 외 법인세, 특별소비세, 주세는 모두 1983년까지만 유지되고, 이후로는 폐지되었다. 소득계급별로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는 직접세에만 적용될 수 있다. 즉 소득세의 경우는 발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정보량은 많이 감소하여 현재는 과세표준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료만을 수록하고 있고, 법인세의 경우는 발간 초기부터 1986년까지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상의 변천을 살펴볼 때 『國稅統計年報』는 귀속연도 기준 1987년을 기점으로 가장 심한 변화를 보였다<sup>7)</sup>. 이후로는 모든 세목에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자료와 시도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모두 삭제되었고, 법인세의 소득계급별 세부담과 같은 자료는 모두 삭제되었다. 현재의 『國稅統計年報』는 소득계급별 자료, 비과세 감면자료, 체납액 자료 등과 같은 국세 관련 연구에 가장 필요한 정보는 전혀 없으며, 稅目別 徵收額을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表 Ⅲ-3〉 『國稅統計年報』에 收錄된 內容의 變化

	시 도 별	감 면	소득계급별
소득세	1971~1986	1965~1986	1965~현재 <sup>1)</sup>
법인세	1971~1986	1965~1983	1965~1986 <sup>2)</sup>
부가가치세	1971~1986	1977	
특별소비세	1971~1986	1977~1983	
주세	1971~1986	1965~1983	

註 : 1) 소득계급별 산출세액

2) 소득계급별 법인수

7) 발행연도 기준 1988년부터 『國稅統計年報』의 표지는 새롭게 디자인되었고, 정보의 양을 대폭 줄이는 대신 각 통계자료에 대해 5년간 자료를 수록하였다.

## 2. 地方稅 關聯資料의 評價

앞 장에서 지방세 관련자료로 대표적인 내무부의 『地方稅政年鑑』의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의 『地方稅政年鑑』 자료의 양과 내용을 평가해 본다. 먼저 발간된 책자의 페이지 수를 사용하여 자료의 양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자료의 배열 등과 같은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국세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 본다.

『地方稅政年鑑』의 경우 1964년부터 발간되었지만, 그 당시의 편집방식이 현재와는 판이하게 달라 페이지 수로만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비교적 현재의 편집형태와 비슷한 1979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비교해 본다.

〈表 Ⅲ-4〉는 귀속연도 기준으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의 징수와 부과에 대한 자료가 차지하는 페이지 수와 여러 가지 재산세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재산세 관련자료가 차지하는 페이지 수를 사용하여 변화추세를 살펴본다. [圖 Ⅲ-4]와 [圖 Ⅲ-5]는 〈표〉의 결과를 요약하여 부과 징수자료의 추세와 재산세 관련자료의 추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1979년 이후 초기 6년간의 자료량은 심한 변화를 보였고, 특히 1981년에는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자료의 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91년에는 자료량이 가장 많은 총 660페이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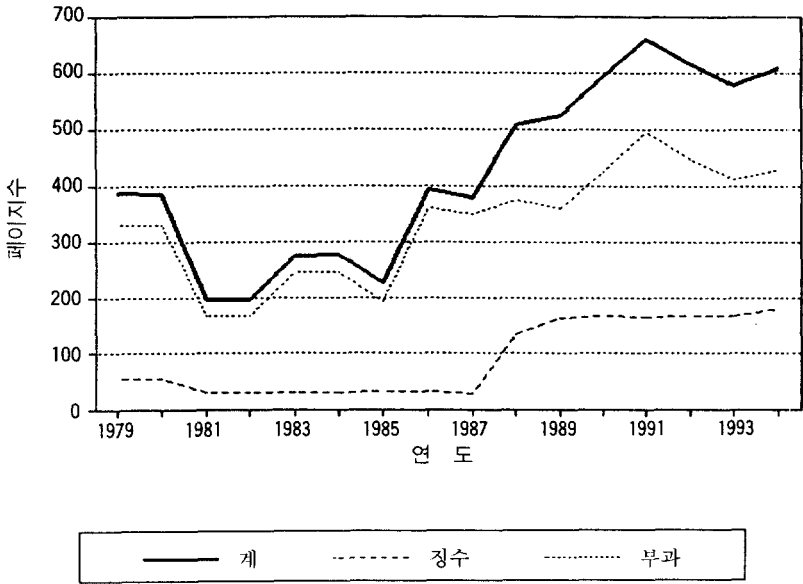
지방세 자료량의 추세는 국세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국세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료의 양이 줄어드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는 자료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表 Ⅲ-4〉『地方稅政年鑑』의 分量 變化(1979~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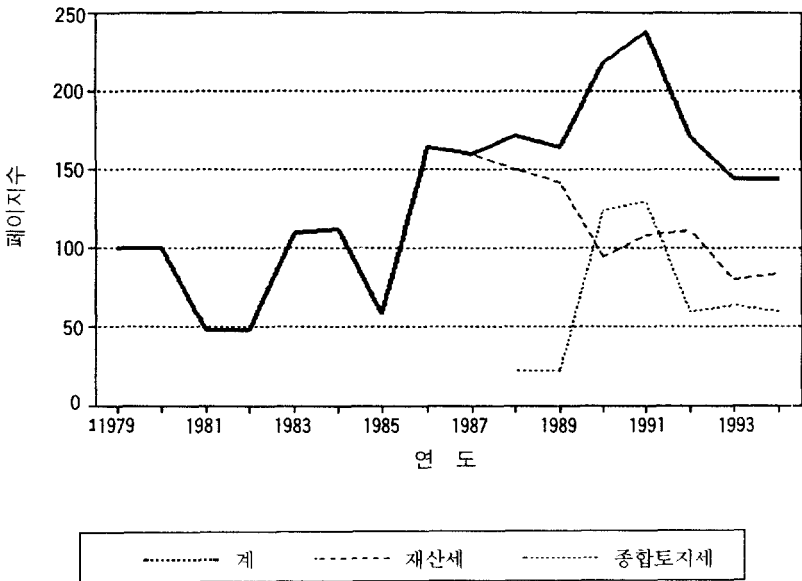
(單位: 페이지)

귀속 연도	징수 및 부과			재산세(부과)			비 고
	계	징수	부과	계	재산세	종합토지세	
1979	387	56	331	100	100		
1980	385	56	329	100	100		
1981	198	30	168	48	48		
1982	198	30	168	48	48		세외수입 포함
1983	274	30	224	110	110		세외수입 포함
1984	276	30	246	112	112		세외수입 포함
1985	226	32	194	58	58		세외수입 포함
1986	392	32	360	164	164		세외수입 포함
1987	378	29	349	160	160		세외수입 포함
1988	508	134	374	172	150	22	세외수입 포함
1989	524	164	360	164	142	22	
1990	592	168	424	218	94	124	
1991	660	166	494	238	108	130	
1992	616	168	448	171	111	60	
1993	578	168	410	144	80	64	
1994	608	180	428	144	84	60	

[圖 Ⅲ-4] 賦課·徵收 實績



[圖 Ⅲ-5] 財産稅(賦課)의 分量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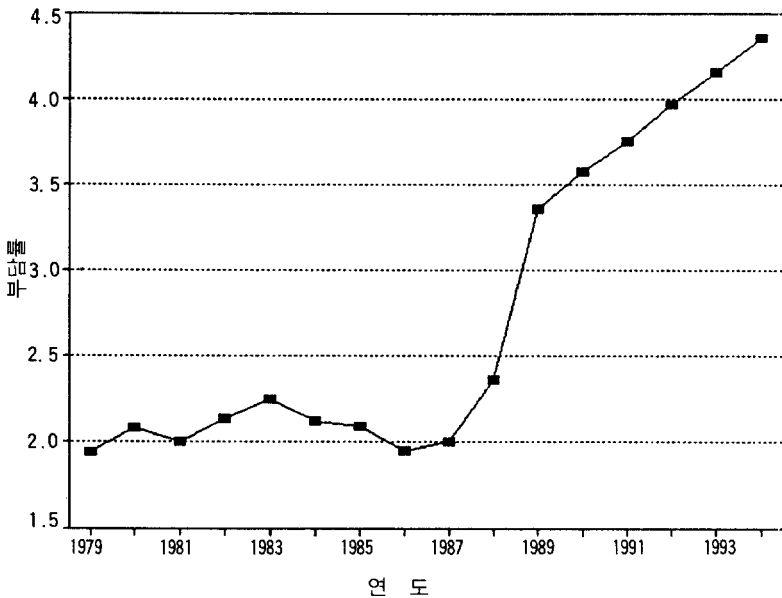


앞에서 국세부담률과 국세 관련자료량 사이의 관계를 回歸分析式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지방세부담률과 지방세 관련 자료량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圖 III-6]은 1979~1994년 간의 지방세 규모를 국민총생산액으로 나눈 지방세부담률의 변화추이로 지방세 부담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지방세 부담추이와 지방세 관련 자료량 간의 회귀식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정보량}) &= 14.3 + 149.14(\text{지방세부담률}), R^2 = 0.72 \\ (t &= 6.0) \end{aligned}$$

지방세부담률과 정보량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정치가 149.14이며, 통계적인 유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방세의 경우는 地方稅

[圖 III-6] 地方稅負擔率의 推移



負擔率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관련자료량도 증가하여, 국세 관련자료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地方稅政年鑑』 자료의 변천을 통해 지방세 관련자료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보았다. 『地方稅政年鑑』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와는 달리 소득계층별 분포자료, 비과세 감면자료, 체납액 자료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료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세와 국세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국세의 경우는 현재 중요한 자료는 별로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 3. 外國의 租稅 關聯情報 內容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 관련자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조세 관련정보의 내용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적인 참고자료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에서 연간 발행하는 국세청의 통계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파악해 본다. 각국의 조세 관련 통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附錄 Ⅳ>에 자세히 실었으며, 여기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신 앞에서 중요한 조세 관련정보로 비교한 감면 공제, 소득계급별 분포, 체납액, 부의 분포, 지역별 자료와 같은 비교적 중요한 자료들의 수록여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조세 관련자료와의 차이점을 파악해 본다.

<表 Ⅲ-5>는 5개국 조세 관련 통계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5개 사항에 대한 정보수록의 여부를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5개 자료는 우리나라 『國稅統計年報』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이다. 모든 국가에서 1개 정도의 자료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료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II-5〉 各國의 租稅 關聯 統計資料 比較

	미 국	영 국	싱가포르	일 본	대 만
감면·공제	○	○	○	○	○
계급별 자료	○	○	○	○	○
채납액	○	×	○	○	○
부에 대한 자료	×	○	×	×	×
지역별 자료	○	○	-	○	○

註：○는 자료 있음, ×는 자료 없음.

#### 4. 綜合評價

이상에서 우리나라 조세 관련자료의 양과 내용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국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國稅統計年報』가 기초자료이며, 발간 초기에는 소득계급별 분포, 비과세 감면, 지역별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의 양은 줄어가고, 1987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체계와 내용을 수록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國稅統計年報』는 조세 관련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정보는 별로 없고, 세목별 납세자 수 및 징수결과에 대한 자료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다. 반면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地方稅政年鑑』의 경우는 시간이 감에 따라 더 많은 정보의 양을 포함하였으며, 현재는 소득계급별 자료, 비과세 감면, 지역별 자료 및 채납액 자료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 관련자료는 수록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과 양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조세 관련자료로서 國稅와 地方稅가 情報의 量과 質에서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조세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정부 부서의 재량에 의해 자료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국세와 지방세 자료체계의 차이는 해

당부서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관심은 국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세의 세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세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의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한 방안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 지방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지방세 관련자료도 국세 관련자료와 같은 형태를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 租稅 關聯資料 體系가 풍부한 量과 質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당 정부 부서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정보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조세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情報公開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Ⅳ. 現行 租稅 關聯資料 體系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앞 장에서는 우리나라 조세 관련자료의 현황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자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현행 조세 관련자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먼저 자료공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제고에 대해 논하고, 연간 통계자료와 미시자료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1. 資料公開에 대한 認識 提高

조세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統計資料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국세의 경우는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내용이 빈약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된 이유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국민들과 자료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조세가 납세자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납세자의 관심 또한 매우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租稅 關聯資料를 公開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만은 더욱 구체적일 수 있다. 정부와 납세자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정보를 공유하여 對稱的인 情報 體系下에서 정부는 납세자에게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공개 여부가 정부의 선택사항일 때는 정보를 공개하여 납세자를 설득하는 방법과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서 납세자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매우 이상적인 방안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적으며 정부는 납세자의 홍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번째 방안은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비대칭적인 정보하에서 납세자의 비판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매우 유효하며 지속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이루어진 일종의 公共財 性格을 가지므로 국가안전 등과 같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를 통해 정부와 국민들간의 對稱的인 情報關係에서 정책방향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유는 정부가 선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필연적이며 이러한 환경하에서 정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세 관련정보는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납세자들이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정부의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가시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표면화되면 해당 공직자가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자 개인의 신분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조세 관련자료가 양과 질에서 뒤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구조하에서는 정보를 축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구조하에서 자료공개 수준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세 관련자료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公共情報인 만큼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보호되어야 하며, 행정부서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향후 세계개혁을 시도할 때는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정책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정책안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서만이 논리적 설득이 가능하며, 감각적인 구호 등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점차로 줄어들 것이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科學的인 評價作業이 필수적이며, 이는 資料의 公開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 2. 年間 統計資料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가. 需要者 爲主의 資料生産

조세 관련 연간통계집을 발간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조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國稅統計年報』의 경우 7개의 지방청별로 국세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청 조직은 일반적인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국세청이 세무행정에 적합하도록 임의적으로 5개의 지방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중부청의 경우는 서울과 강원도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지역이므로, 일반적으로 지역별 통계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한다.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 내부에서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조세 관련 연구를 하는 전문가나 국민들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와 함께 수록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필요한 자료는 거의 수록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판이 높을 수 있다. 게다가 지방청별로 구분한 자료의 양이 매우 많아 연간자료집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행정구역상의 시도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생산하게 되면 지역간 연구를 시행하는 데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행정구역별로 구분한 통계자료가 초기에는 수록되었으나, 이후 삭제되었다. 현행 국세행정체계가 지방청별로 자료가 구분되어 있어 행정구역인 시도별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작업을 필요로 하겠지만, 조세와 지역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결론적으로 『國稅統計資料』는 세무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 나. 多様な 租稅情報의 收錄

앞 장에서 『國稅統計年報』 자료는 중요한 조세 관련정보인 소득계층별 분포, 비과세 감면, 체납액, 지역별 자료 등의 정보를 거의 수록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국세 관련정보에서 가장 기초자료인 『國稅統計年報』 자료가 조세연구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의 수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나라에서 발행하는 연간 租稅 關聯 統計資料集에는 대부분 이러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통계자료가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科學的인 租稅研究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세계개혁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개혁안을 유도할 수 없게 된다.

『國稅統計年報』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表 IV-1>과 같다. 현재 『國稅統計年報』가 담고 있는 통계자료는 소득계층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비과세 감면자료 및 체납세액 자료도 새롭게 추가하여 소득계층별 및 지역별로 세분하고, 또한 업종별로도 구분하여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表 IV-1> 『國稅統計年報』에 收錄하여야 할 內容

자료의 종류	내 용
소득계층별 자료	직접세에 적용 현재의 통계치를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수록
비과세 감면자료	모든 세목에 적용 비과세 감면실적, 업종별 실적, 지역별 실적
체납세 자료	모든 세목에 적용 소득계급별 실적, 지역별 실적
지역별 자료	모든 세목에 적용 모든 통계치를 지역별로 세분

### 다. 正確한 資料의 生産

『國稅統計年報』는 가장 기초적인 국세 관련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여 정제하는 다른 자료들도 모두 오류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 관련 기초자료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0년간의 『國稅統計年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분화된 자료를 합산할 경우 자료상의 합산수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발견하였다<sup>8)</sup>. <表 IV-2>는 『國稅統計年報』의 30년간 자료에서 발견한 합산수치의 오류를 세목별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30년간 총 314개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는 연간 평균 10개 정도의 합산오류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177개로 가장 많고, 소득

<表 IV-2> 『國稅統計年報』 30年間 誤謬資料의 數

(單位: 개)

세	목	오 류 수
소	득 세	81
법	인 세	177
자	산 재 평 가 세	4
부	가 가 치 세	10
특	별 소 비 세	14
주	세	18
증	여 세	7
상	속 세	3
합	계	314

8)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한 자료를 모두 합산하였을 때, 수록된 전체 합계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오류만을 고려하였으며, 그 외 있을 수 있는 오류는 파악할 수 없었다.

세가 81개로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세목은 많지 않은 수준을 보여 준다. 연도별 오류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구하지 못했지만 발행 초기에는 내용이 많음에 따라 오류의 양도 증가하였다. 이후로 점차 정보의 양이 줄어들어 따라 오류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1987년 이후로는 내용이 대폭 감소하여 오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表 IV-3〉은 1962년부터 1994년까지 『地方稅政年鑑』 자료에서 발견된 오류의 수이다. 세분화된 통계치와 전체 합계가 차이가 날 경우에 해당하는 오류로서 발견하기 쉬운 오류일 뿐이다. 33년간의 통계수치에서 전체 오류는 66개로 나타났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國稅統計年報』와 비교할 때 오류의 수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으며,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율을 보이다가 현재는 오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表 IV-3〉 『地方稅政年鑑』에 나타난 誤謬

(單位: 개)

세	목	오류 수
취득세	세	12
재산세	세	7
주민세	세	7
등락세	세	6
자동차세	세	2
농지세	세	2
도축세	세	3
도시계획세	세	3
사업소세	세	4
유형음식세	세	2
소방공동시설세	세	1
마권세	세	7
종합토지세	세	1
총괄		9
합계		66

### 3. 微視資料의 公開

조세 관련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료는 『國稅統計年報』나 『地方稅政年鑑』처럼 매년 발간되는 통계자료인데 이를 일반적으로 集計資料라 한다. 집계자료는 개인 혹은 법인별로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통계수치이다. 이러한 자료는 미리 계획된 테두리 내에서 통계자료를 구하여 보고한 자료이므로, 조세와 관련한 중요정보를 바로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집계자료는 어떠한 자료를 통계치로 계산하여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國稅統計年報』자료는 소득계층별 자료, 비과세 감면 등과 같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므로 집계자료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두 번째 자료는 집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료를 말하며, 주로 개인별 혹은 법인별로 국세청에 신고한 납세자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를 원자료, 미시자료 등으로 표현하는데 납세대상인 개별·주체별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발표된 집계자료가 특정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微視資料를 사용하면 간단히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미시자료의 사용은 세법개정안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國稅統計年報』자료는 집계자료인 만큼 세법개정안을 평가하는 데 기초자료로 간접적으로 활용될 뿐이며,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액이 신설된 1993년의 세법개정안을 평가할 때, 이 개정안이 부부가 같이 일하는 가구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가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보여주는 발표된 집계자료는 없으므로 개정안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미시자료는 각 가구가 가지는 인구·사회 및 경제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제가 개정될 때 각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세법 개정안을 각 가구에 각각 적용하여 변화를 측정하여 집계하므로, 정확도에 있어서는 집계자료를 사용한 概略的 分析結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세제 개정안을 科學的이고 論理的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微視資料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세에 관한 논의가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직관에 머무는 주된 이유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 및 가구별 소득, 세부담 정도, 소비 등과 같은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미시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微視資料를 바탕으로 한 租稅政策의 評價模型을 오래 전에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모형을 개선하여 왔다<sup>9)</sup>. 이러한 모의실험모형은 주로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세제 개혁안을 제안할 때 模擬實驗模型을 통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혁안이 논의된다. 또한 학계에서도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안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대표적으로 NBER의 TAXSIM 모형을 들 수 있다<sup>10)</sup>.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치에 근거한 과학적인 세제 개혁과정을 거침으로써 세제 개혁안에 대한 非能率的인 論議를 피할 수 있으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시자료의 종류와 실태를 파악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미시자료가 활용되는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한다.

---

9) 모의실험모형에 대한 OECD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연구로 OECD(1988)를 들 수 있으며, 미국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ffice of Tax Analysis(1990),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한 예로는 Bahl et al.(1993)를 참조하기 바란다. 모의실험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각국에서 개발된 정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erz(1991)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TAXSIM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Feldstein(1983)을 참조하기 바란다.

## 가. 우리나라 微視資料의 實態

우리나라에서 조세와 관련된 대표적인 미시자료로는 국세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의 신고자료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개인과 법인이 매년 소득 및 세부담액을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로 소득 관련자료로는 가장 정확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관한 자료는 設問調査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지만,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이 보고한 소득액에 근거하므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설문대상은 소득을 과소보고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통계치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國稅廳 申告資料의 경우 개인 및 기업의 신고소득은 설문조사를 통한 소득보다 훨씬 정확하다. 조세 관련자료가 모두 소득과 연관을 가지는 만큼 국세청 신고자료는 조세 관련 연구와 정책평가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의 신고자료는 국세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sup>11)</sup>.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국세청 자료를 사용한 조세 관련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에서 신고자료를 공공의 목적으로도 공개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자료가 특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과 세액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個人情報를 保護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미시자료를 사용한 분석은 특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불특정한 모든 개인을 분석한 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므로 개인정보가 공개될 위험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미시자료에 있는 개인별 식별자료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조세 관련 연구가 비과학적이고 이에 따라 조세개혁

11) 조세정책입안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원의 세제실에서도 신고자료는 소장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국세청에 요청하여 자료분석 의뢰를 하는데, 상호협조체계가 순조롭지 않은 실정이다.

에 관한 논의가 직관과 구호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조세 관련 미시자료로 국세청의 신고자료 이외에 통계청의 미시자료가 있다. 대표적인 자료는 「都市家計年報資料」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도시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축적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신고자료의 차선택으로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sup>12)</sup>. 특히 이 자료는 가구별 지출구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비 관련세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통계청의 미시자료도 과거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모두 공개되어 조세 관련 연구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설명했듯이 소득에 관한 정보가 과소평가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자료의 信賴度는 떨어진다. 이는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점인 만큼, 조세 관련 연구가 좀더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의 신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의 미시자료와 같은 형태의 자료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대우패널 微視資料」가 있다. 이 자료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자료로서 가구별 패널형식의 자료이므로 향후 조세 관련 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재산 관련 연구에 귀중한 미시자료로는 내부부의 종합토지세 및 건물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들 수 있다. 종합토지세 자료는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관련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건물분 재산세의 미시자료는 세대별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택소유와 세제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sup>13)</sup>. 그러나 내부부 자료도

12)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세목의 세부담을 분석한 연구로 玄鎭權(1996)을 들 수 있다.

13) 玄鎭權(1996)에 있는 玄鎭權·魯英勳의 연구는 내부부의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연구 목적으로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 나. 美國의 租稅關聯 微視資料 活用實態

미국의 개인 및 법인은 매년 국세청에 所得과 稅額을 신고하여야 하며,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는 이 신고내용을 전산기에 입력하여 보관한다. 매년 신고하는 규모는 1989년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는 1억 1,200만명, 법인의 경우는 약 360만 업체이다. 이들의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IRS에서는 우리나라의 『國稅統計年報』에 해당하는 통계집을 발간하는데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1)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2) Corporate Income Tax Return인데, 각각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통계자료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의 소득신고를 사용한 결과가 아닌, 전체 모집단에서 일정률의 표본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이다. 즉 1989년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는 약 11만명, 법인의 경우는 약 7만 7천 업체를 모집단에서 層化 無作為 標本(Stratified Random Sample)을 추출하여, 이 표본을 사용하여 매년 국세통계집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IRS 내의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이하 SOI로 표기함)이므로 일반적으로 이 표본자료를 SOI 개인 및 법인 자료라고 한다.

SOI 자료는 層化 無作為 標本資料이므로 각 개개의 자료는 전체 모집단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SOI 微視資料는 조세 관련 모형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자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조세 관련 연구에 제공되고 있다. 먼저 재무성에 있는 OTA(Office of Tax Analysis)와 국회 내에 있는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서 사용하는 자료로서, 이는 국세청법에 의해 모든 SOI 微視資料는 매년 OTA와 JCT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SOI 자료는 정부기관에서 조세정책 연구자료로 쓰이므로, 임의로 정제됨이 없이 모든 항목이 그대로 제공된다. 반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SOI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삭제하고, 간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정제한 후 일반인에게 제공된다<sup>14)</sup>. 그러므로 SOI 微視資料는 미국의 微視資料를 이용한 조세정책 모형개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부 稅制는 個人所得稅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個人所得稅를 중심으로 租稅政策 평가모형이 개발되어 있다. 조세정책 평가모형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구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지출구조 등을 반영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IRS의 SOI 微視資料는 개인의 소득과 항목별 세액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의 인구 및 사회 특성과 지출구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으므로 SOI 자료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특성 및 필요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SOI 자료를 합산(Merge)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조세 관련 연구기관에서 SOI 자료와 합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와 이들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Current Population Survey(이하 CPS로 표기함) : 인구특성
- (2) Survey of Consumer Finance(SCF) : 금융소득 및 부동산
- (3)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SIPP) : 사회부조
- (4) Consumer Expenditures Survey(CES) : 소비 지출형태

14) 미시자료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연구가 통계학의 Disclosure Avoidance Research 분야에서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는 IRS (1987)를 참조하기 바란다.

출처가 서로 다른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합산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기관별로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합산시킨다<sup>15)</sup>. OTA에서는 SOI 자료를 중심으로 CPS, SCF, SIPP 자료를 합산시켜 재무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의회 소속의 기구인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는 SOI 자료를 중심으로 CPS, CES 자료를 합산하여 CBO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SOI 자료와 개인별로 합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며, 많은 전산비용이 소요되므로 3~5년에 한번 씩 자료합산을 시도한다. 자료의 합산을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매년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베이스와의 時差問題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하여 자료의 변형을 시도한다. 첫째 과정은 소득종류별 상승률, 인플레이션 등의 巨視指標를 사용하여 기존의 자료에서 거시경제 효과를 반영한다. 둘째 과정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존의 가중치도 시간적 차이를 가지므로, 최근의 모집단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가중치를 계산한다<sup>16)</sup>.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을 통하여 시차를 조정하는 작업을 外插(extrapolation)이라고 한다.

합산한 자료가 가지지 못하는 특정 항목을 기존의 항목을 통하여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特定階層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다른 계층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개혁의 효과를 전체 모집단에 적용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예를 들면, 控除項目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 소득신고 계층(non-itemizer)은 표준공제액이 적용되는데, 이 계층에 대한 항목별 공제액을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제항목을 신고한 계층(itemizer)의 항목별 공제항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

---

15) 미시자료를 서로 합산하는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OTA(1978)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새로운 가중치를 구하는 모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Office of Tax Analysis (1990)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여, 공제항목을 신고하지 않은 계층의 공제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세개혁의 효과를 전체 계층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代替(imputation)라고 한다. 기존의 자료를 사용하여 代替(imputation)하는 항목은 약 250개이며, 이러한 과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代替(imputation)할 항목을 선정하고, 이 항목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새로 계산하여 구할 항목에 대한 통계적 관계식을 구한 후, 새로운 항목을 구할 방법론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구한 계산 수치를 거시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고 재조정한다<sup>17)</sup>.

이렇게 이루어진 자료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후로는 여러 가지 租稅政策에 관한 연구가 쉽게 가능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稅制의 稅負擔 分析, 조세개혁에 따른 개인의 행태변화, 세수규모의 변화, 형평성의 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다. 租稅政策의 변화가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 및 행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微視資料를 사용한 분석이 집계자료를 사용한 분석보다 개인 혹은 가구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므로, 정확도가 훨씬 높다. 또한 微視資料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연구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세제개혁으로 인한 세수규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할 때, 세법개정 각 항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수추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시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租稅政策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微視資料이다<sup>18)</sup>.

17) 代替(imputation)하는 구체적 과정은 Office of Tax Analysis(1987)를 참조하기 바란다.

18)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OECD 국가들의 소득세 모형에 관한 조사는 OECD(1988)를 참조하기 바란다.

#### 다. 改善方向

조세 관련연구 및 정책분석에서 미시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여러 가지 형태의 微視資料 중에서도 국세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의 미시자료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조세 관련연구 및 정책분석에 매우 중요하다. 조세 관련연구와 조세정책 분석에 국세청의 자료가 활발히 사용되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이 반드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시자료를 오래 전부터 공개한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세청에서는 미시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한 후 미시자료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별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등이므로, 이러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최고 10위 순위에 있는 소득자는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는 미시자료가 전체 모집단 자료가 아닌 표본자료이므로, 최고 10위에 있는 소득자는 평균치만을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미시자료를 연구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미시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정보의 보호라면 이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전체 정보 중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면, 국세청에서 미시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국세청의 미시자료가 조세 관련연구와 합리적 조세개혁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미시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 1) 標本의 選定

개인의 소득세 신고자료와 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는 많은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미시자료가 모집단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 비율(예를 들면 5%)의 표본을 추출하되, 無作為 層化標本(stratified random sample)을 만든다. 즉 과세소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계층에서 서로 다른 비율의 표본을 추출한다. 대체로 고소득층의 소득분포는 편차가 크므로 높은 비율의 표본을 선정하고, 중간소득계층의 소득분포는 편차가 작으므로 낮은 비율의 표본을 선정한다. 이때 가능하다면 최고 1%의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은 모두 표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최고 10위 내의 소득자는 평균소득을 사용한다.

### 2) 個人 識別資料의 除去

추출된 표본은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모집단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5%)의 개인 및 법인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번호는 모두 제거한다.

### 3) 標本抽出方法의 標準化 및 週期的 供給

이상과 같은 표본추출 방법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표본추출방법을 표준화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단순작업을 전산기에 의존할 수 있어 업무량의 증가도 없게 된다. 즉 소득계층의 분류방법과 표본추출 비율에 대해 매년 같은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조세 관련 연구기관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제공 체계를 갖출 수 있다.

## V. 結 論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로 높아짐에 따라, 合理的인 租稅政策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稅法改正이 있을 때마다 국회사 언론에서는 항상 많은 비판을 하지만, 논의의 수준이 매우 직관적이거나 개략적인 분석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조세관련 자료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조세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초자료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國稅統計年報』와 내무부의 『地方稅政年鑑』을 들 수 있다. 『國稅統計年報』자료는 국세관련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수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조세 관련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소득계층별 자료, 비과세 감면자료, 지역별 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지 않으므로, 관련 정책입안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1966년 이후로 『國稅統計年報』가 수록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발간 초기에는 소득계층별 자료, 비과세 감면자료, 지역별 자료 등의 중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록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감소되었다. 특히 1988년부터는 수록한 정보의 양을 대폭 줄여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지방세 관련자료는 국세에 비해 풍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즉, 조세정책 및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은 정부와 국민들간의 對稱的인 情報體系下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국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조세 관련정

보는 공개되는 情報의 量과 質이 정부 부서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조세 관련정보는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公共情報인 만큼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공개수준에 대해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조세 관련정보는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公共財이므로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정책안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적인 정책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감각적인 구호 등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점차로 줄어들 것이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과학적인 평가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료의 공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대표적인 조세 관련자료인 『國稅統計年報』는 수록하는 내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정보인 소득계층별 분포, 비과세 감면자료, 지역별 자료, 체납액 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租稅研究의 活性化와 科學的 租稅政策 樹立을 위해 국세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의 개별 신고자료 중에서 일정비율을 無作爲 抽出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물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고, 간접적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參 考 文 獻

- 羅城麟·玄鎮權,『租稅 및 社會扶助政策의 效果分析: Tax-Benefit 模型을 中心으로』, 研究報告書 93-09, 韓國租稅研究院, 1993.
- 尹昌仁,「OECD 統計活動 現況과 示唆點」, 政策資料 95-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5.
- 玄鎮權,『租稅政策과 所得再分配』, 研究論文集 96-01, 韓國租稅研究院, 1996.
- Bahl, R., R. Hawkins, R. Moore and D. Sjoquist, “Using Microsimulation Models for Revenue Forecasting in Developing Countries,”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1993.
- Feldstein, Martin, “Behavioral Simulation Methods in Tax Policy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 IRS, “Statistics of Income and Related Administrative Record Research: 1986~1987,”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Publication 1299*, November 1987.
- Merz, Joachim, “Microsimulation: A Survey of Principles,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1991.
- OECD, *A Comparative Study of Personal Income Tax Models*, a Report by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1988.
- Office of Tax Analysis, *The Treasury Individual Income Tax Simulation Model*,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rch 1990.
- , *Compendium of Tax Research*, Department of Treasury, Washington DC, 1978.

## 〈統計資料〉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서울, 1966~1995.
- 內務部, 『地方稅政年鑑』, 서울, 1978~1995.
- , 『地方稅統計』, 서울, 1972~1975.
- , 『地方稅統計年報』, 서울, 1971.
- 內務部 地方局, 『地方稅統計年報』, 서울, 1968~1970.
- , 『地方稅務統計年報』, 서울, 1964~1967.
- 內務部 地方財政局, 『地方稅統計』, 서울, 1976, 1977.
- 財務部 司稅局, 『稅務統計年報』, 서울, 1959~1962, 1964, 1965.
- , 『大韓民國 稅務統計書』, 서울, 1958.
- 日本 國稅廳, 『平成 5年度版 第119回 國稅廳 統計年報書』, 東京:財團  
法人 大藏財務協會, 1995.
- 中華民國 財政部 統計處, 『賦稅統計年報』, 臺北:財政部 統計處, 1994.
- Inland Revenue Statistics and Economics Office, *Inland Revenue  
Statistics 1995*, London: HMSO, 1995.
- Inland Revenue Department, *Annual Report for the year ended 30  
June 1995*, 1996.
-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Annual Report*, 1994.
- Internal Revenue Service,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1993.
-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1993.
- , *Source Book: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1993.

## 附 錄

- 附錄 I. 우리나라 租稅體系의 變遷
- 附錄 II. 『稅務統計年報』의 變遷過程(1961~1965)
- 附錄 III. 『國稅統計年報』의 變遷
- 附錄 IV. 地方稅 資料의 變遷
- 附錄 V. 主要國의 租稅關聯 統計資料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조선은행권발행세													
인지세													
취인세													
특별입장세													
마권세													
광고세													
건축세													
면허세													
증권거래세													
주세													
청량음료세													
음료세													
골패세													
울품세													
직물세													
직물류세													
사탕소비세													
입장세													
통행세													
유홍음식세													
전기가스세													
특별행위세													
영업세													
석유류세													
전화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90.12.31						
방위세							90.12.31						
교통세											94.1.1		
농어촌특별세											94.7.1		

資料 :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자동차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임야세													
	제1종소득세													
	특별소득세													
	호별세													
	가옥세													
	어업세													
	도축세													
	도장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유홍음식세													
	마권세													
	주인세													
	등록세													
	담배판매세													
	면세지특별지세													
	입장세													
	특별사업세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박세													
	선세													
금고세														
점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자료 : 내무부, 『지방세 징연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 지방행정지공』, 재무부, 『한국세제사』.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sup>*)</sup>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 <sup>a)</sup>													
	자동차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도세부가세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특별사업세부가세													
	면세특별지세부가세 <sup>a)</sup>													
	제1종소득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76.12.31						
	어업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76.12.31						
	면허세부가세							76.12.31						
	특별행위세부가세													
	수렵세부가세													
	신세부가세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76.12.31						
	유출음식세부가세							76.12.31						
주민세부가세			73.3.12				76.12.31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sup>1)</sup>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독립세	유홍세 <sup>2)</sup>													
	잡종세 <sup>3)</sup>													
	교통세(서울, 부산) <sup>4)</sup>													
	시가지계획특별세(서울) <sup>5)</sup>													
	부·읍·면세특별호세													
	축건세													
	선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금고세													
	접객인세													
	벌목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76.12.31 도세제시야말						
	주민세							76.12.31 도세제시야말						
	자동차세							76.12.31 도세제시야말						
	마권세							76.12.31 도세제시야말						
	토지초과보유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담배판매세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76.12.31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독립세	유홍세 <sup>1)</sup>														
	잡종세 <sup>1)</sup>														
	교통세(서울·부산) <sup>1)</sup>														
	시가지계획특별세(서울) <sup>1)</sup>														
	부·읍·면세특별호세														
	축견세														
	선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금고세														
	접객인세														
	발목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주민세														
	자동차세														
	마권세							88.12.26	도세로 이양						
	토지초과보유세			86.12.31				88.6.16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폐지						
	종합토지세							88.6.16							
담배소비세							88.12.28								
담배판매세	84.12.24						88.12.28	담배소비세의 신설로 폐지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									91.12.14	도세 이양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註 : 1) 해당 당시의 지방세는 도세, 부세, 읍·면세의 체제로 구성(부·읍·면세가 지금의 시·군세에 해당), 부세 17개, 읍·세 12개 세목임.

- 2) 부세에만 존재.
- 3) 해당 당시의 잡종세에는 배우세, 당구대세, 피아노세 등의 11개 세목이 있었으나, 1946. 10. 15의 개정으로 9개 세목이 폐지되고 축견세와 선세만이 남음.
- 4) 도세의 모든 세목에 부가세를 신설.
- 5) 시·군의 부가세제도를 폐지.

資料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재무부, 『한국세제사』.

## 4. 지방세 체계의 변천(특별시, 직할시세, 구세)

### 1. 특별시, 직할시세

		1945~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보통세	취득세		88.4.6								
	등록세		88.4.6								
	주민세		88.4.6								
	자동차세		88.4.6								
	농지세		88.4.6								
	도축세		88.4.6								
	마권세		88.4.6	88.12.28 도세로 2인양							
	담배소비세		88.12.28								
목적세	공동시설세		88.4.6								
	도시계획세		88.4.6								
	지역개발세					91.12.14					

### 2. 구세

		1945~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보통세	면허세		88.4.6								
	재산세		88.4.6								
	토지초과보유세		88.4.6	88.6.16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폐지							
	종합토지세			89.6.16							
목적세	사업소세		88.4.6								

註 : 1. 1988. 4. 6 이전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세는 도세와 시군세를 모두 합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8. 4. 6에 구가 자치구로 됨에 따라 이전의 특별시, 직할시세 중 면허세, 재산세, 토지초과보유세, 사업소세가 구로 이관됨.

資料 : 내부부, 『지방세징연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재무부, 『한국세제사』.

## 附錄 II. 『稅務統計年報』의 變遷過程 (1961~1965)

- 『稅務統計年報』에 수록된 통계의 종류와 형식에 있어서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매년 조금씩 통계자료가 보완되고 수록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단 1965년 『稅務統計年報』에서의 소득세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세무서별 계급별 자료가 간단해졌다) 전체적으로 1962년 『稅務統計年報』의 체제에 따라 작성되어 큰 변화가 없다.

### 1. 1961年 『稅務統計年報』

- 소득세 · 상속세 : 계급별 자료가 1962년 『稅務統計年報』에 비해 자세하다.

### 2. 1962年 『稅務統計年報』

- 전반적으로 1961년 자료에 비해 수록범위가 넓어졌다.
- 1945년 이래의 내국세 징수상황을 새로 수록하였다.
- 1961년 『稅務統計年報』에 있었던 교육세, 토지소득세에 대한 개별 자료가 없어지고 자산재평가세에 관한 개별 자료가 수록되었다.
- 소득세, 법인세 : 행정구역별 자료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 재산세 : 재산내역별 자료가 수록되었다.
- 소비과세 : 광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마권세 등에 대한 개별 자료는 없어졌으나 대체로 1961년 자료에 비해 자세하다. 석유류세에 관한 개별 자료가 수록되었다.

### 3. 1964年 『稅務統計年報』

- 1962년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별자료가 수록되었다.

#### 4. 1965年 『稅務統計年報』

- 1964년까지의 행정구역별 자료가 세무서별 자료로 대체되었다.
- 소득세 : 세무서별 계급별 자료가 간단해졌다.
- 재산세 : 증여세의 경우 세무서별 자료가 보강되었다.
- 간접세 : 월별표기 방식으로 자세해졌다. 증권거래세 자료가 없어졌다.

※ 참고(1966년 『國稅統計年報』)

- 『稅務統計年報』가 제호를 『國稅統計年報』로 바꾼 첫해의 자료이나 이전의 내용에 비해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자료수록 범위를 넓히고 국세개요를 새로 수록하였다.
- 소득세 : 세무서별 자료가 이전에 비해 자세해졌다.

## 附錄 Ⅲ. 『國稅統計年報』의 變遷

### 1. 所得稅資料의 變遷(1965~1994)

#### 가. 1965年 所得稅에 關한 統計資料

- 1) 예산
  - 국세 징수상황
- 2) 부과
  - 간접국세 부과실적
- 3) 징수
  - 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월별징수상황
- 4) 납세자수
  - 직접국세세목별 납세자 인원수
  - 소득세내역별 인원수(정기분)
  - 소득세내역별 인원수(수시분)
- 5)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과세상황
  - 연도별 소득세 자진납부상황표(정기분)
  - 소득세(총괄)
  - 소득세(정기분)
  - 세무서별 소득세(정기분)
  - 소득세(수시분)
  - 소득세(원천징수분)
  - 세무서별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계급별 상황
  - 납액계급별 소득세 결정상황
  - 업종별 사업소득세(정기분)
- 6) 감면
  - 중경감면상황 :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 7) 국세심사 사무처리 : 재조사분
  - 심사분

재심사분

8) 세목별 세무소송상황

나. 196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사업소득세 신고 및 과세상황표(정기분)

삭제: 연도별 소득세 자진납부 상황표(정기분)

다. 1968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사업소득세 신고 및 과세상황표(정기분이 지방국세청별 사업소득세 신고 및 과세상황 정기분으로 변경)

라. 1969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감사-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세목별 감사실적

삭제: 소득세 내역별 인원수(수시분)

마. 1970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납액계급별 소득세 결정상황

바. 197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시도별 내국세 징수

변경: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과세상황이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부과액으로 변경

소득세(총괄) →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부과(총괄)

소득세(정기분) →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부과: 정기분

소득세(수시분) →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부과: 수시분

소득세(원천징수분) →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계급별상황 → 소득계급별 산출세액

업종별 사업소득세(정기분) → 지방국세청별 업종별 사업소득세 산출세액: 정기분

중경감면상황: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 연도별 내국세 감면: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 사. 1972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소득세 내역별 인원수(정기분)

세무서별 소득세(정기분)

세무서별 소득세 원천징수

지방국세청별 업종별 사업소득세 산출세액 : 정기분

변경 : 연도별 내국세 감면 :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가 연도별 내국세 감면으로 변경

### 아. 1974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지방국세청별 사업소득세 신고 및 부과 : 정기분 항목이 없어짐.

### 자. 1975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부과 : 수시분 항목이 없어짐.

변경 :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변경

### 차. 1984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세목별 · 유형별 감면실적항목이 없어짐.

### 카. 198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시도별 징수

### 타. 1987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총괄)

지역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연도별 · 지방국세청별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결정유형별 신고

연도별 · 기장의무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업종별 소득표준율 조정

연도별 · 지방국세청별 원천징수 의무자

과세표준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

삭제 : 연도별 ·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부과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부과 : 총괄항목이 없어짐.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부과 : 정기분 항목이 없어짐.

소득계급별 산출세액 항목이 없어짐.

월별 징수

변경 : 지방국세청별 소득세 원천징수가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부과로 변경

## 2. 法人稅 資料의 變遷

### 가. 1965年 法人稅에 관한 統計資料

#### 1) 예산

국세징수상황

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월별 징수상황

#### 2) 부과

직접국세 부과실적

#### 3) 징수

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월별 징수상황

#### 4) 연도별 법인세 과세상황

#### 5) 연도별 법인세 자진납부상황

#### 6) 법인세 총괄

#### 7) 법인세 확정사업연도 조사결정분

#### 8) 법인세 청산소득 및 수시부과

#### 9) 법인세 중간예납분

#### 10) 법인세 원천징수분

#### 11) 법인수

연도별 법인수 상황

법인소득금액 계급별 법인수 (확정사업연도 조사결정분)

법인세납액계급별 법인수 (확정사업연도 조사결정분)

법인세 납액계급별 법인수 (중간예납분)

법인세 내역별 법인수 (확정사업연도 조사결정분)

#### 12) 감면

중경감면상황

#### 13) 세무서별 법인세

#### 14) 국세심사 사무처리 :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

#### 15) 세목별 세무소송상황

#### 나. 1967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법인종류별 법인수

법인종류별 가동법인과 휴업법인수

사업연도별 법인수

#### 다. 1968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법인세 청산소득, 수사부과, 중간예납 항목이 없어짐.

법인세 납액계급별 법인수 (중간예납분)

법인세내역별 법인수, 법인종류별 가동법인과 휴업법인수, 사업연도별 법인수 항목이 없어짐.

추가: 영업별 법인수

변경: 법인세 총괄이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부과: 총괄로 변경

법인세 확정사업연도 조사결정분이 지방국세청별 법인세부과 확정사업연도 조사결정분으로 변경

#### 라. 1969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감사-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세목별 감사실적

#### 마. 1970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연도별·세목별 원천징수의무자 수

#### 바. 197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시도별 내국세 징수

지방국세청별·세목별 내국세 부과 (수입분 포함)

연도별 수입제세, 인지수입 및 국고금압류내역

삭제: 세무서별 법인세

변경: 중경감면상황이 연도별 내국세 감면으로 변경

직접국세, 간접국세 부과실적이 지방국세청별·세목별 부과로 변경

국세징수상황이 세목별 내국세 예산 및 징수로 변경

#### 사. 1972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연도별 법인세 자진납부상황

연도별·세목별 원천징수의무자 수

아. 1973~1974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세무서별 내국세 감사항목

자. 1975~198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세목별 국세심사사무처리 :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바뀜.

차. 1982~1983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지방국세청별 법인세부와 확정사업연도 조사결정분  
추가 :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신고

카. 1984~1985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연도별 내국세 감면항목

타. 198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시도별 내국세 징수

파. 1987~1988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연도별 조사법인수 및 법인세징수  
세목별 · 지방국세청별 국세환급금  
삭제 : 월별 내국세 징수  
월별 · 세목별 인지세 및 수입제세징수

하. 1989~1993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법인소득금액계급별 법인수, 법인세납액별 법인수  
추가 : 연도별 · 결산기별 법인수, 연도별 · 자본금규모별 법인수, 연도별 · 외형규모별 법인수

3. 資產再評價稅 資料의 變遷(1965~1994)

가. 1965年 資產再評價稅에 관한 統計資料

- 1) 예산  
국세징수상황
- 2) 부과

직접국세부과실적

3) 징수

지방국세청별 내국세징수

월별징수

세무서별 징수상황

4) 법인수

직접국세 세목별 납세자인원 수

재평가액 및 재평가세액별 법인 수

5) 자산재평가세

6) 재평가세 결정내역

7) 자산별 재평가상황

8) 감면, 국세심사 사무처리, 소송사건에 관한 내용 없음.

#### 나. 197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시도별 내국세 징수, 세목별 예산 및 징수, 지방국세청별·세목별 내국세 부과

변경: 자산재평가액 항목이 지방국세청별 자산재평가세 부과로 변경(내용도 변경)

재평가액 결정내역 항목이 지방국세청별 자산재평가세 산출세액으로 이름만 변경

자산별 재평가 항목이 지방국세청별·자산종류별 재평가액으로 이름만 변경

삭제: 조세수입추세, 국세징수상황, 연도별·세목별 내국세 징수, 직접국세 부과

#### 다. 1972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연도별·지방국세청별 자산재평가세 부과

변경: 지방국세청별·세목별 직접국세 납세자 인원수 항목이 지방국세청별·세목별 납세자 인원수로 변경

#### 라. 1973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재평가액 및 재평가세액별 법인수

**마. 1975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연도별 · 지방국세청별 자산재평가세 부과

**바. 1978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지방국세청별 · 자산종류별 재평가액

**사. 198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지방국세청별 · 자산종류별 재평가액 항목이 다시 추가됨.

**아. 198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시도별 내국세 징수 항목

**자. 1987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월별 내국세 징수 항목

**4. 證券去來稅 資料의 變更**

**가. 1965~1970年 證券去來稅에 관한 統計資料**

- 1) 예산
  - 국세징수상황
- 2) 부과
  - 간접국세 부과실적
- 3) 징수
  - 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월별징수상황
  - 증권거래세 과세상황

**나. 1979~1983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시도별 내국세 징수,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납세자 인원수  
변경 : 증권거래세 과세상황이 지방국세청별 증권거래세 부과로 변경

**다. 1984~1985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감사실적에 증권거래세가 포함됨.

### 라. 198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식제 : 시도별 내국세 징수

### 마. 1987~1994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지방국세청별 증권거래세 부과の内容이 변경됨(상장주권, 일반주권으로 나뉨)

식제 : 월별 내국세 징수

## 5. 附加價値稅 資料의 變更(1977~1993)

### 가. 1977年 附加價値稅에 관한 統計資料

#### 1) 예산

세목별 내국세 예산 및 징수

#### 2) 부과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내국세 부과  
연도별 · 지방국세청별 내국세 부과

#### 3) 징수

세목별 내국세 예산 및 징수  
연도별 · 세목별 내국세 징수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내국세 징수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내국세 징수상황  
시도별 · 세목별 내국세 징수  
월별 · 세목별 내국세 징수  
세무서별 · 세목별 내국세 징수  
월별 · 세목별 인지수입 및 수입제세 징수

#### 4) 납세자 인원수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내국세 인원수

#### 5) 지방국세청별 ·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지방국세청별 ·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과세특례자

#### 6) 연도별 내국세 감면

#### 7) 국세심사사무처리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분

#### 8) 세목별 세무 소송건수

9) 지방국세청별·세목별 감사실적

나. 1978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연도별 내국세 감면

나머지는 '가'항과 동일

다. 1982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연도별·세목별 납세자 변동추이

나머지는 '나'항과 동일

라. 198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시도별·세목별 내국세 징수

나머지는 '다'항과 동일

마. 1987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1) 예산

세목별 예산 및 실적

2) 부과

세목별 예산 및 실적-징수결정액

3) 징수

연도별·세목별 조세징수

세목별 예산 및 실적

지방국세청별·세목별 실적

세무서별·세목별 실적

연도별 부가가치세 징수

업체별 부가가치세 신고

세목별·지방국세청별 국세환급금

4) 납세자 인원수

연도별·세목별 납세자

지방국세청별·세목별 납세자

5)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6) 납부 및 환급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금액

- 7) 부가가치세율  
연도별 · 업태별 부가가치세율
- 8) 경정 현황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 현황
- 9) 면세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
- 10) 기타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분  
세목별 세무 소송건수

#### 바. 1988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 변경 : '업태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이 '업태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변경  
나머지는 '마'항과 동일

### 6. 特別消費稅 資料의 變更

#### 가. 1977年의 特別消費稅에 관한 統計資料

- 1) 예산  
세목별 내국세 예산 및 징수
- 2) 부과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내국세 부과
- 3) 징수  
월별 · 시도별 내국세징수실적  
월별 · 세목별 인지수입 및 수입제세 징수
- 4) 납세자 인원수  
연도별 · 세목별 납세자 인원수
- 5) 물품 및 장소별 특별소비세 부과  
지방국세청별 물품 및 장소별 특별소비세 부과
- 6) 감면  
세목별 · 유형별 감면실적

7) 국세심사 사무처리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분

8) 세목별 세무소송건수

나. 1978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감사실적

나머지는 '가'항과 동일

다. 1984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세목별 · 유형별 감면실적

나머지는 '나'항과 동일

라. 198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시도별 · 세목별 내국세 징수

마. 1987~1994年の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1) 예산, 징수

세목별 내국세 예산 및 징수

월별 · 세목별 인지수입 및 수입제세 징수 항목이 없어짐

2) 부과

연도별 소비제세 부과

3) 징수

월별 · 세목별 인지수입 및 수입제세 징수 항목이 없어짐

4) 납세자 인원수

연도별 · 세목별 납세자

5) 연도별 주요품목 출고

6) 연도별 주요품목 특별소비세 부과

7) 물품 및 장소별 특별소비세 부과

지방국세청별 · 물품 및 장소별 특별소비세 부과

8) 국세심사 사무처리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9) 세목별 세무소송

## 10) 감사

## 7. 酒稅 資料의 變更

## 가. 1965年 酒稅에 관한 統計資料

## 1) 예산

국세징수상황

## 2) 부과

간접국세 부과실적

세무서별 간접국세 부과실적

## 3) 징수

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월별 징수상황

## 4) 주류별 주세추세

## 5) 주세 과세상황(지방국세청별)

## 6) 주류 제조면허장 수

## 7) 주세 감면실적

## 8) 범칙

간접국세 범칙

범칙자에 대한 주세 부과현황

주류밀조 검거건수

간접국세 범칙행위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범칙 검거건수

## 9) 국세심사 사무처리

국세심사 사무처리 실적 :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

## 10) 세목별 세무소송상황

## 나. 1967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범칙 검거실적, 부정주류 검거실적, 간접국세  
범칙

나머지는 '가' 항과 동일

## 다. 1969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감사 - 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 세목별 감사실적

**라. 1970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간접국세 범칙에서 주세 범칙자료가 따로 떨어져 나옴.

지방국세청별 주류 제조 면허장 수 항목이 주류 및 발효제 제조 면허장 수로 변경

**마. 197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시도별 내국세 징수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내국세 부과(수입분 포함)

연도별 · 수입제세, 인지수입 및 국고금압류내역

변경 : '연도별 · 주류별 주세추세' 항목이 '연도별 · 주류별 주세부과'로 변경  
(내용은 동일)

주세 과세가 지방국세청별 · 주류별 주세부과로 변경(내용은 동일)

**바. 1972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납세자 인원수

연도별 내국세 감면

삭제 : 주세감면

변경 : 주세범칙자료가 다시 지방국세청별 간접국세 범칙처분에 포함됨.

**사. 1973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세무서별 내국세 감사 항목이 없어짐.

**아. 1975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세목별 국세심사사무처리 :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이 '세목별 국세심사사무처리 :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바뀜.

**자. 1979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감사실적'에서 주세항목이 기타로 들어감.

**차. 1984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연도별 내국세 감면항목

**카. 198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시도별 내국세 징수

### 타. 1987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연도별 주요주류출고 항목이 첨가

연도별 주류판매장 면허장 수 항목이 첨가

월별·세목별 인지세 및 수입제세징수

삭제: 월별 내국세 징수

변경: 지방국세청별 부정주류적발이 범칙유형별 부정주류적발로 변경

지방국세청별 주류제조 면허자 범칙검거가 범칙유형별 검거실적으로  
변경

### 파. 1992~1993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범칙유형별 부정주류적발, 범칙유형별 검거실적 항목이 없어짐.

변경: 지방국세청별 발효제 제조 면허장 수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없음.

나머지는 '카'항과 동일

## 8. 相續稅 資料의 變更(1965~1994)

### 가. 1965年 相續稅에 관한 統計資料

#### 1) 예산

국세 징수상황

#### 2) 부과

직접국세 부과실적

#### 3) 징수

지방국세청별 내국세징수

월별징수

세무서별 징수상황

#### 4) 납세자수

직접국세 세목별 납세자 인원수

상속세납액 계급별 인원수

#### 5) 연도별 상속세 과세상황

상속세 (총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상속재산내역

#### 6) 국세심사 사무처리: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

#### 7) 세목별 세무소송상황

**나. 196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상속재산내역 항목이 상속재산 종류별표로 변경

**다. 1968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항목이 과세가액계급별 상속세 결정상황으로 변경

**라. 1969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감사 - 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세목별 감사실적

**마. 197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시도별 내국세 징수, 세목별 예산 및 징수,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내국세 부과

변경 : 연도별 상속세 과세상황 → 연도별 상속세 부과  
 상속세(총괄) → 지방국세청별 상속세 부과  
 과세가액계급별 상속세 결정상황 → 과세가액계급별 상속세 부과  
 상속재산종류별표 → 지방국세청별 ·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액계급별 인원수 → 지방국세청별 상속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

삭제 : 조세수입추세, 국세징수상황, 연도별 · 세목별 내국세 징수, 직접국세 부과

**바. 1975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바뀜.

**사. 1980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지방국세청별 상속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

**아. 198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시도별 내국세 징수

**자. 1987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연도별 ·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삭제 : 월별 내국세 징수

**차. 199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 연도별 · 지방국세청별 상속세 부과항목이 합쳐짐.

삭제 : 지방국세청별 ·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계급별 상속세 부과

**9. 贈與稅 資料의 變更**

**가. 1965年 贈與稅에 관한 統計資料**

- 1) 예산
  - 국세 징수상황
- 2) 부과
  - 직접국세 부과
- 3) 징수
  - 지방국세청별 내국세 징수
  - 월별 징수
  - 세무서별 징수상황
- 4) 납세자수
  - 직접국세 세목별 납세자 인원수
  - 증여세 납액계급별 인원수
- 5) 연도별 증여세과세 상황
  - 증여세 (총괄)
  - 증여재산내역
  - 증여세 납액계급별 인원수
  - 세무서별 상속세 및 증여세
- 6) 국세심사사무처리 :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
- 7) 세목별 세무소송상황

**나. 1968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결정상황

삭제 : 증여재산내역

**다. 1969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 감사-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 · 세목별 감사실적

**라. 197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추가: 시도별 내국세 징수, 세목별 예산 및 징수, 지방국세청별·세목별 내국세 부과

변경: 연도별 증여세 과세상황 항목이 연도별 증여세 부과로 이름만 변경  
 증여세 총괄 항목이 지방국세청별 증여세 부과로 이름만 변경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결정상황 항목이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로 이름만 변경  
 증여세 납액계급별 인원수 항목이 지방국세청별 증여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로 변경

삭제: 조세수입추세, 국세징수상황, 연도별·세목별 내국세 징수, 직접국세 부과

**마. 1972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세무서별 상속세 및 증여세

**바. 1975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재조사분, 심사분, 재심사분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바뀜.

**사. 1980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지방국세청별 증여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

**아. 1986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시도별 내국세 징수

**자. 1987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변경: 연도별 증여세 부과와 지방국세청별 증여세 부과가 연도별·지방국세청별 증여세 부과항목으로 합쳐짐.

삭제: 월별 내국세 징수

**차. 1991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 10. 土地超過利得稅 資料의 變更

#### 가. 1991年 土地超過 利得稅에 관한 統計資料

- 1) 예산
  - 세목별 예산 및 징수실적
- 2) 징수
  - 연도별 · 세목별 조세징수
  - 지방국세청별 · 세목별 실적
  - 세무서별 · 세목별 실적
- 3) 납세자수
  - 연도별 · 세목별 납세자
- 4)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지역 현황
  - 지가등급지역 지정 읍 · 면 · 동수
  - 지가등급지역의 면적
- 5)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현황
- 6)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심사청구
- 7) 소송사건

#### 나. 1992年 統計資料의 變更事項

삭제 : 토지초과이득세 1년단위 과세지역 현황

## 附錄 IV. 地方稅 資料의 變遷

### 1. 取得稅 資料의 變遷

#### 가. 1967년의 취득세(동 부가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지방세계(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도세(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조), 시세(·), 군세(·), 비고

###### (2) 시·도별 지방세 징수상황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 (3)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목별 신장

1966년 실적, 1967년 실적, 신장률

###### (4) 도세, 시세, 군세 세목별·연도별 징수액 비중

###### (5) 연도별 목표·조정·징수 대비

##### 2) 부과실적

###### (1) 부과상황(총괄)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자진납부공제세액, 차감세액, 납세인원, 전년 대비(세액, 비율)

###### (2) 부과상황(도세)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자진납부공제세액, 차감세액, 납세인원

###### (3) 부과상황(시세)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자진납부공제세액, 차감세액, 납세인원

###### (4) 부과상황(군세)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자진납부공제세액, 차감세액, 납세인원

###### (5) 과세 물건별 부과상황(도세)

① 토지 : 건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② 건물 : 上同

③ 선박(舟) : 上同

④ 광업권 : 上同

⑤ 어업권 : 上同

⑥ 차량 : 上同

⑦ 중기 : 上同

⑧ 입목 : 上同

⑨ 임야 : 上同

(6) 과세 물건별 부과상황(시세) : 上同

(7) 과세 물건별 부과상황(군세) : 上同

####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삭제 : 가-1) - (2), (3), (4), (5)

추가 : 지방세 분포 상황

##### 2) 부과실적

추가 :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에서 ⑩ 기타

####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 :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

-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내용이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의 형태로

##### 2) 부과실적

삭제 :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에서 ⑩ 기타

####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도세 징수상황, 시세 징수상황, 군세 징수상황

변경 : 지방세 분포상황 → 시군구별 징수상황

##### 2) 부과실적

변경 :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의 내용

⑧ 입목, ⑨ 임야 → ⑧ 입목(임야)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 추가 : - 시도별 부과상황에 인원(1972, 1971, 신장률), 세액(1972, 1971, 신장률)
-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에 건수(1972, 1971, 신장률), 세액(1972, 1971, 신장률)

**사. 1973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 부과상황(총괄)의 내용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자진납부공제세액, 차감세액, 납세인원, 전년 대비(세액, 비율) →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가산세액(경감세액), 결정세액, 납세인원, 작년대비(세액, 신장률)

- 부과상황(도세, 시세, 군세)의 내용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자진납부공제세액, 차감세액, 납세인원 →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가산세액(경감세액), 결정세액, 납세인원

-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의 내용

- 건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가산세액(경감세액), 결정세액, 납세인원
- 건물 → 건축물(건물, 구축물, 부대설비, 소계)

**아.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삭제 : 부과상황에서 작년대비

**자.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취득세 부가세의 폐지)**

1) 징수실적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2) 부과실적

추가 : -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의 항목

⑨ 사치성 재산(계,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외국산 고급자동차, 고급선박)

- 납세액별 인원표

## 차.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구분 : 총괄, 도세, 시세, 군세 → 총괄, 시지역, 군지역

-내용 : 건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가산세액(경감세액), 결정세액, 납세인원 → 건수, 세액, 인원

-과세 물건별 부과상황에서 기타가 추가되고 사치성 재산 항목이 따로 표로 만들어짐

추가 : -사치성 재산

○총괄(합계, 토지, 건물)

○토지분(합계,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건물분(합계,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자동차, 고급선박)

-대도시내 신설공장(합계, 토지, 건물, 차량, 중기)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토지(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건축물

○기타

## 카. 197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사치성 재산

총괄, 토지분, 건물분 → 총괄, 토지분, 건물분, 고급자동차

## 타.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부과상황(총괄, 시지역, 군지역)

변경 : -과세 물건별 부과상황이 다음의 형태로 변경

○총괄(합계)

-보통징수(시부, 군부)

-자진납부(시부, 군부)

-납액별 인원표가 다음의 형태로 변경

○총괄      ○시부      ○군부

- 사치성 재산이 다음의 형태로 변경

- 총괄      ○ 시부      ○ 군부

추가 : -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에서 항공기

- 사치성 재산의 항목에 고급선박

### 파. 199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에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가산금 항목

삭제 : 사치성 재산에 고급선박

### 하. 1993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에 과점주주

- 사치성 재산에 고급선박

### 거.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 2. 財產稅 資料의 變遷

### 가. 1967년의 재산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지방세계(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도세(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조), 시세(·), 군세(·), 비고

##### (2) 시·도별 지방세 징수상황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 (3)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목별 신장

1966년 실적, 1967년 실적, 신장률

##### (4) 도세, 시세, 군세 세목별·연도별 징수액 비중

##### (5) 연도별 목표·조정·징수 대비

#### 2) 부과실적

##### (1) 부과상황(총괄)

- 토지(세액, 납세인원), 가옥(·), 광구(·), 선(·), 합계(·)
- (2) 부과상황(시세)  
上同
- (3) 부과상황(군세)  
上同
- (4) 토지에 대한 과세상황  
과세분(지적, 임대가격), 비과세분(지적, 임대가격), 합계(지적, 임대가격)
- (5) 가옥에 대한 과세상황  
과세분(건평면적, 부과지수, 가옥구수), 비과세분(·), 합계(·)
- (6) 광구에 대한 과세상황  
과세분(전액과세(광구수, 광구면적), 반액과세(·), 합계(·)), 비과세분(광구수, 광구면적), 합계(광구수, 광구면적)
- (7) 선에 대한 과세상황  
과세량(척수, 톤수, 적재량, 과세척수), 비과세량(·), 합계(척수, 톤수, 적재량)
- (8) 토지에 대한 과세상황(시별)  
과세분(지적, 임대가격), 비과세분(지적, 임대가격), 합계(지적, 임대가격)
- (9) 가옥에 대한 과세상황(시별)  
과세분(건평면적, 부과지수, 가옥구수), 비과세분(·), 합계(·)
- (10) 광구에 대한 과세상황(시별)  
과세분(전액과세(광구수, 광구면적), 반액과세(·), 합계(·)), 비과세분(광구수, 광구면적), 합계(광구수, 광구면적)
- (11) 선에 대한 과세상황(시별)  
과세량(척수, 톤수, 적재량, 과세척수), 비과세량(·), 합계(척수, 톤수, 적재량)
- (12) 토지에 대한 과세상황(군별)  
과세분(지적, 임대가격), 비과세분(지적, 임대가격), 합계(지적, 임대가격)
- (13) 가옥에 대한 과세상황(군별)  
과세분(건평면적, 부과지수, 가옥구수), 비과세분(·), 합계(·)
- (14) 광구에 대한 과세상황(군별)  
과세분(전액과세(광구수, 광구면적), 반액과세(·), 계(·)), 비과

- 세분(광구수, 광구 면적), 합계(광구수, 광구면적)  
 (15) 선에 대한 과세상황(군별)  
 과세량(척수, 톤수, 적재량, 과세척수), 비과세량(·), 합계(척수, 톤수, 적재량)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삭제 : 가-1) - (2), (3), (4), (5)  
 추가 : 지방세 분포 상황
- 2) 부과실적  
 변경 : -토지에 대한 과세상황에서 임대가격이 삭제  
 -가옥에 대한 과세상황이 다음으로 변경  
 과세분(구수, 과세면적, 과세표준액), 비과세분(·), 합계(·)  
 -선에 대한 과세상황이 다음으로 변경  
 과세상황(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비과세상황(·), 합계(·)  
 삭제 : 가-2) - (8) ~ (15)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 2) 부과실적  
 변경 : -토지에 대한 과세상황의 항목이 다음으로 변경  
 과세분(필수, 지적, 과세표준액), 비과세분(·), 합계(·)  
 -가옥에 대한 과세상황의 항목이 다음으로 변경  
 제1종(구수, 면적, 과세표준액, 납세인원),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제7종(·), 제8종(·), 합계(·)  
 \* 비과세분은 ( ) 내에 표시  
 -선에 대한 과세상황이 다음으로 변경  
 과세분(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비과세분(·), 합계(·)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내용이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의 형태로 변경.

## 2) 부과실적

변경 : -토지에 대한 과세상황의 항목이 다음으로 변경

과세분(필수, 지적, 과세표준액), 비과세분(·), 합계(·), 대지  
(지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염전(·), 광천지(·), 지소  
(·), 잡종지(·), 교회 및 사찰지(·), 공원지(·), 철도용지  
(·), 수도용지(·)

-가옥에 대한 과세상황의 항목이 다음으로 변경

과세분(구수, 면적, 과세표준액, 인원), 비과세분(·), 합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  
종(·), 제7종(·), 제8종(·)

###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도세 징수상황, 시세 징수상황, 군세 징수상황

변경 : 지방세 분포상황 → 시군구별 징수상황

#### 2) 부과실적

추가 : 건물의 부대설비 과세상황

과세표준액, 세액, 납세인원, 비고

###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토지에 대한 과세상황에 구도용지(지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기타(·) 항목의 추가

변경 : -선에 대한 과세상황의 항목이 다음으로 변경

합계(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과세분(·), 비과세분(·), 여객  
선(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화물선(·), 여선(·), 기타  
선(·)

-건물 부대설비 과세상황이 가옥과세상황의 항목으로 이동

### 사. 1973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 추가: -토지 과세상황에 법인의 비업무용(전, 답, 임야) 항목이 추가되고  
대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교회지, 사찰지, 공원지, 철도용  
지, 수도용지, 법인의 비업무용(전, 답, 임야) 항목에 소항목으로  
필수가 추가
- 가옥 과세상황에 건축물(구수, 과표, 세액, 인원) 항목이 추가
  - 건물의 부대설비 과세상황이 다음과 같이 추가  
합계(건수, 과표, 인원), 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  
에어컨(·), 금고(·), 주유시설(·), 공연장(·), 관람장(·),  
조명(·), 방음(·), 기타 건축설비(·)
  - 건축물 과세상황이 다음과 같이 추가  
합계(건수, 과표, 인원),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유원지 옥외 오락실(·), 기타 유사시설(·)
  - 선 과세상황의 여객선, 화물선, 어선, 기타선에 소항목으로 인원이  
추가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과세상황이 다음과 같이 추가  
합계(필수, 지적, 과표, 인원), 전(·), 답(·), 대지(·), 염전  
(·), 광천지(·), 지소(·), 잡종지(·), 임야(·) 변경: 광구  
과세상황이 다음으로 변경  
합계(광구수, 광구면적, 세액, 인원), 과세분(·), 비과세분(계  
(·), 법 183, 184, 185조 해당(·), 법 188조 1항 5호 단서 해당  
(·))

## 아.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 변경: -토지 과세상황을 과세상황과 비과세상황으로 분리하여 표로 만들  
-가옥 과세상황을 과세상황과 비과세상황으로 분리하여 표로 만들  
-선박 과세상황을 과세상황과 비과세상황으로 분리하여 표로 만들
- 추가: -용도별 가옥현황(과세분)이 다음과 같이 추가  
총계(구수, 면적), 특수건물,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창고
- 용도별 가옥현황(비과세분)이 다음과 같이 추가  
총계(구수, 면적), 특수건물,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창고
- 공한지가 다음과 같이 추가  
총계(필수, 지적, 과세표준액, 세액, 납세인원), 대지, 잡종지
- 건축물 과세상황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

- 옥외스탠드,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구축물, 잔교, 독크, 조선대,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기타
- 골프장이 다음과 같이 추가
  - 총계(과세표준액, 세액, 납세인원), 토지(필수, 지적, 과세표준액, 세액, 납세인원), 건물(·)
- 고급오락장이 추가
- 주택이 추가
- 물건별 면세점 해당분이 추가
  - 총계(과세표준액, 납세인원, 필수), 토지, 가옥, 광구, 선박

#### 자.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 2) 부과실적
  - 추가 : -비과세분(총괄, 시세, 군세)
  - 별장
  - 납세액별 인원표가 다음과 같이 추가
    - 총계, 토지, 건물

#### 차.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 변경 : -가옥 과세상황이 건축물 과세상황으로 이름이 변경
  - 추가 : -부과상황 총괄, 시세, 군세의 과세현황과 비과세현황이 하나의 표로 다음과 같이 추가
    - 총계(세액, 납세인원), 과세분, 비과세분 -사치성 재산
    -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 토지(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 건축물
      - 기타

#### 카. 1983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 변경 : 부과상황에 특별시·직할시 항목이 추가

#### 타.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부과상황(총괄, 시지역, 군지역)

추가 : - 항공기항목이 부과상황에 추가

- 선박종별 과세현황이 추가

- 선박종별 비과세현황이 추가

- 고급오락실 과세상황이 추가

- 중과세 현황이 추가

- 항공기 과세상황이 추가

#### 파. 199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 중기 과세상황

- 소액불징수분 과세상황

삭제 : 토지에 대한 (비)과세상황

변경 : 납액별 인원표 → 건축물분 납액별 인원표

#### 하. 1992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주택 과세상황 → 주택과표 단계별 과세상황

#### 거. 1993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주택과표 단계별 과세상황 → 건축물과표 단계별 과세상황으로

#### 너.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 3. 免許稅 資料의 變遷

#### 가. 1967년의 면허세(동 부가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1)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지방세계(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도세(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조), 시세(·), 군세(·), 비교

- (2) 시·도별 지방세 징수상황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 (3)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목별 신장  
1966년 실적, 1967년 실적, 신장률
- (4) 도세, 시세, 군세 세목별·연도별 징수액 비중
- (5) 연도별 목표·조정·징수 대비

## 2) 부과실적

- (1) 부과상황(총괄)  
시도별, 제1종(건수, 세액),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계(·), 전년도 실적과 대비(세액, 신장률)
- (2) 부과상황(도세)  
시도별, 제1종(건수, 세액),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계(·), 비교
- (3) 부과상황(시세)  
도별, 시별, 제1종(건수, 세액),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계(·)
- (4) 부과상황(군세)  
시도별, 제1종(건수, 세액),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계(·)

##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삭제: 가-1) - (2), (3), (4), (5)  
추가: 지방세 분포 상황
- 2) 부과실적  
추가: 목표액과 부과실적 대비

##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 2) 부과실적  
삭제: 목표액과 부과실적 대비

###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이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으로 변경.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내용이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질 손액, 미수액, 징수율의 형태로 변경.

###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도세 징수상황, 시세 징수상황, 군세 징수상황

변경 : 지방세 분포상황이 시군구별 징수상황으로 변경

###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부과상황에 세액(세액, 구성비, 1971년대비 증가율), 인원(인원, 구성비, 1971년 대비 증가율)

### 사. 1973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인원이 건수로 변경

### 아.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면허세 부과상황

추가 : 수시분

### 자.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면허세 부가세의 폐지)

#### 1) 징수실적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이 부과액으로 변경

### 차.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구분이 총괄, 도세, 시세, 군세, 수시분에서 총괄, 수시분, 시지역, 군 지역으로 변경

추가 :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 카.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구분이 총괄, 수시분, 시지역, 군지역에서 총괄, 정기분(합계, 시부, 군부), 수시분(합계, 시부, 군부)으로 변경

### 타. 1992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구분이 총괄, 정기분(합계, 시부, 군부), 수시분(합계, 시부, 군부)에서 총괄(시부, 군부), 정기분 과세상황, 수시분 과세상황,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 과세상황으로 변경

추가 : 구분에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 과세상황

##### ○총괄

시도별, 합계(건수, 금액), 1종(·), 2종(·), 3종(·), 4종(소계(·), 승용(·), 기타(·)), 5종(2륜자동차)(·)

##### ○시부 : 총괄과 동일

##### ○군부 : 총괄과 동일

### 파.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 4. 登錄稅 資料의 變遷

### 가. 1977년 등록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세목별 · 시도별 분석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 (2) 시 · 도별 단체별 분석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 2) 부과실적

##### (1) 부과상황(총괄)

합계(건수, 세액, 인원), 부동산등기, 선박등기·등록, 항공기등록, 법인등기, 상호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신탁재산등기, 공장및광업재단등기, 기타, 저작권등록, 출판·공연등록, 특허권등록, 상표·영업표등록, 수출입업등록, 건설업자면허등록, 군납업등록, 동일채권의 2종 이상등기

(2) 부과상황(시지역)

上同

(3) 부과상황(군지역)

上同

(4) 등록세 중과현황

합계(건수, 세액, 인원),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공장·신설증설

(5)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나. 1979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 부과상황 항목에 자동차등록이 추가됨

다. 1980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 항목에서 출판·공연등록 → 출판권및공연권등록

라. 1983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 부과상황 항목에서 선박등기·등록 → 선박등기

공장및광업재단등기 → 재단등기(공장 및 광업)

상표·영업표등록 → 상표영업권등록

동일채권의 2종 이상 등기 → 동일채권의 2종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 중과현황 → 중과세(총괄)

\* 계(건수, 세액, 인원), 법인, 부동산, 공장의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중과세(시지역) : 上同

중과세(군지역) : 上同

### 마.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총괄 → 총괄(비과세제외)

시지역 : 보통징수(소계, 시부, 군부)

군지역 : 자진납부(소계, 시부, 군부)

-부과상황 항목에서 자동차등록 → 차량등록

추가 : 부과상황 항목에 가산금이 추가됨

### 바. 1988년 통계자료의 변경

부과실적 총괄의 항목 중에서 계, 부동산등기, 신탁재산등기, 재단등기(공장 및 광업)의 자료 누락

### 사. 199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부과상황 항목의 특허권등록

-중과세(총괄, 시부, 군부)

변경 : 부과상황 항목의 수출입업등록 → 무역·무역대리업 등록

추가 : -부과상황 항목에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록

-정률세 과세상황

-정액세 과세상황

-등기종류별 과세상황

-법인등기 종류별 과세현황

- 합계(건수, 세액, 인원), 영리법인 설립·합병, 비영리법인 설립·합병, 영리법인 자본증자, 비영리법인 자본증자, 자산재평가 적립금, 중과세법인, 지점설치, 주소변경·기타

-부동산등기 종류별 과세현황

- 합계(건수, 세액, 인원), 상속, 무상, 유상취득, 보존등기, 공유·합유·총유등기, 용의물건등기, 경매·압류 가등기, 공장 신증설, 중과세 부동산, 기타

### 아.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 5. 自動車稅 資料의 變遷

### 가. 1967년의 자동차세(동 부가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지방세계(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도세(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조), 시세(·), 군세(·), 비교

##### (2) 시·도별 지방세 징수상황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 (3)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목별 신장

1966년 실적, 1967년 실적, 신장률

##### (4) 도세, 시세, 군세 세목별·연도별 징수액 비중

##### (5) 연도별 목표·조정·징수 대비

#### 2) 부과실적

##### (1) 부과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

승용자동차(관용(대수, 세액), 자가용(·), 영업용(·), 소계(·)),  
 승합자동차(관용(대수, 세액), 자가용(·), 영업용(·), 소계(·)),  
 화물자동차(관용(대수, 세액), 자가용(·), 영업용(·), 소계(·)),  
 자동차전차(관용(대수, 세액), 자가용(·), 영업용(·), 소계(·)),  
 합계(관용(대수, 세액), 자가용(·), 영업용(·), 소계(·)), 1966년  
 부과실적 대비(세액, 신장률), 비교

###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삭제 : 가-1) - (2), (3), (4), (5)

추가 : 지방세 분포 상황

#### 2) 부과실적

추가 : -1968년도 목표액과 부과실적 대비표가 다음과 같이 추가

1968년 목표액, 1968년 부과실적(대수, 세액), 비율, 비교

-부과상황에 특수자동차가 추가

변경 : 부과상황에서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4기통 초과),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  
 기타 소형승용차

승합자동차 → 합승자동차(대형), 합승자동차(소형)로 세구분되었  
 으며,

자동차전차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로 이름이 변경

####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도세 징수상황, 시세 징수상황, 군세 징수상황

변경 : 지방세 분포상황 → 시군구별 징수상황

####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시도별 부과상황에 대수(1972, 1971, 신장률), 세액(1972, 1971, 신장률)

-과세물건별 부과상황이 다음과 같이 추가

대수(1972, 1971, 신장률), 세액(1972, 1971, 신장률)

#### 사.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시별 자동차대수

변경 : 부과상황에서

승용자동차(4기통 초과),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 기타소형승용차

→ 승용자동차(8기통 이상), 승용자동차(6기통 이상),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 기타소형승용차

삭제 : -시도별 부과상황에 대수(1972, 1971, 신장률), 세액(1972, 1971, 신장률)

-과세 물건별 부과상황

### 아.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자동차세 부가세의 폐지)

#### 1) 징수실적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 자.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이 다음과 같이 추가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변경 : 부과상황에서 승합자동차 대형, 소형의 구분이 없어짐

### 차. 1980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시별 자동차대수

### 카. 198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의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 → 승용자동차(6기통 이하)

### 타.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 (1) 부과상황(총괄)

비영업용(관용(대수, 자동차세, 방위세, 세액계), 자가용(·), 소계(·)),  
업무용(대수, 자동차세, 방위세, 세액계), 합계(대수, 자동차세, 방위세, 세액계)

\* 세로항목 : 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기타, 승합자동차

##### (2) 부과상황(시도별)

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파. 1988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부과상황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자동차 항목이  
추가

### 하. 198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부과상황의 자동차세, 방위세가 삭제

### 거. 199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부과상황에 자동차세, 교육세가 추가

### 너.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 6. 住民稅 및 同 附加稅 資料의 變遷(1973~1994)

### 가. 1973년의 주민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합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대목표액, 대조정액)

##### (2)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도세)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대목표액, 대조정액)

##### (3)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시세)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대목표액, 대조정액)

##### (4)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군세)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대목표액, 대조정액)

##### (5) 각 시도별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2) 부과실적

##### (1) 부과상황(본세)

합계(납세인원, 과세표준, 세액), 균등할(소계(납세인원, 세액), 개인(·), 법인(·)), 소득할(소계(납세인원, 과표, 세액),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특별징수(납세인원, 과세표준, 세액)

- (2) 보통징수 부과상황(총계)  
 합계(부과세액, 납세인원), 균등할(계(세액, 인원), 개인(총대상인원, 과세인원, 세액, 비과세인원), 법인(계, 본점주사무소, 지점·지사·사업장, 세액)), 소득할(계(세액, 인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 (3) 보통징수 부과상황(시계)  
 上同
- (4) 보통징수 부과상황(군계)  
 上同
- (5) 특별징수 부과상황(총계)  
 합계(인원, 과세표준, 세액), 갑종근로소득(·), 갑종배당이자소득(·), 병종배당이자소득(·), 기타소득(·), 농지세(·)
- (6) 특별징수 부과상황(시계)  
 上同
- (7) 특별징수 부과상황(군계)  
 上同
- (8) 소득세할 부담 계층별 상황(합계)
- (9) 소득세할 부담 계층별 상황(시계)
- (10) 소득세할 부담 계층별 상황(군계)
- (11) 법인세할 부담 계층별 상황(합계)
- (12) 법인세할 부담 계층별 상황(시계)
- (13) 법인세할 부담 계층별 상황(군계)
- (14) 농지세할 부담 계층별 상황(합계)
- (15) 농지세할 부담 계층별 상황(시계)
- (16) 농지세할 부담 계층별 상황(군계)

#### 나.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 항목에서 특별징수가 삭제되어 모든 자료가 다음으로 변경

- (1) 부과상황(총괄)
- (2) 부과상황(도세)
- (3) 부과상황(시세)
- (4) 부과상황(군세)
- (5) 소득세할 계층별 부담(시세)

- (6) 소득세할 계층별 부담(군세)
- (7) 법인세할 계층별 부담(시세)
- (8) 법인세할 계층별 부담(군세)
- (9) 농지세할 계층별 부담(시세)
- (10) 농지세할 계층별 부담(군세)

#### 다.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주민세 부가세 폐지)

##### 1) 징수실적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 라.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 항목에서 특별징수가 다시 추가되어 모든 자료가 다음으로 변경

##### (1) 부과상황(총괄)

합계(세액, 인원), 균등할(소계(세액, 인원), 개인(·), 법인(·)), 소득할(소계(계(세액, 인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보통징수(계(세액, 인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특별징수(계(세액, 인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 (2) 부과상황(시세)

上同

##### (3) 부과상황(군세)

上同

##### (4) 세액규모별 인원표(총괄)

- 소득세할 세액규모별 인원표
- 법인세할 세액규모별 인원표
- 농지세할 세액규모별 인원표

##### (5) 세액규모별 인원표(시세)

- 소득세할 세액규모별 인원표
- 법인세할 세액규모별 인원표
- 농지세할 세액규모별 인원표

##### (6) 세액규모별 인원표(군세)

- 소득세할 세액규모별 인원표

- 법인세할 세액규모별 인원표
- 농지세할 세액규모별 인원표

추가 :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 \* 토지(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 \* 건축물
- \* 기타

#### 마. 1980년 통계자료의 변경

변경 : 부과상황의 균등할 항목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균등할(소계(세액, 인원), 개인(·), 법인(·))

→ 균등할(소계(세액, 과세인원, 비과세인원), 개인(·), 법인(·))

#### 바.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다음과 같이 소득할과 균등할을 따로 떼어 크게 두 개의 표를 구성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지만 그 구성항목에는 변화가 없음.

- (1) 소득할
- (2) 균등할

변경 : 세액규모별 인원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그 내용은 소득할 보통징수 납세인원을 말함

- (3) 세액규모별 인원
  - 합계
  - 시부
  - 군부

#### 사. 198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세액규모별 인원이 다시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보통징수)의 세 가지로 변경

- (1) 소득세할(보통징수)(합계, 시부, 군부)
- (2) 법인세할(보통징수)(합계, 시부, 군부)
- (3) 농지세할(보통징수)(합계, 시부, 군부)

### 아. 199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의 균등할 과세상황 항목 중 법인이 개인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변경

### 자. 1993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의 균등할 과세상황 항목 중 개인법인이 법인으로 변경

### 차.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 현황

## 7. 農地稅 資料의 變遷(1967~1994)

### 가. 1967년의 농지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지방세계(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도세(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조), 시세(·), 군세(·), 비고

##### (2) 시·도별 지방세 징수상황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 (3)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목별 신장

1966년 실적, 1967년 실적, 신장률

##### (4) 도세, 시세, 군세 세목별·연도별 징수액 비중

##### (5) 연도별 목표·조정·징수 대비

#### 2) 부과실적

##### (1)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

감류농지세(제1분기, 제2분기, 합계), 을류농지세(제1분기, 제2분기, 합계), 총계

##### (2) 제1분기 감류농지세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

기준수확량, 2.5kl미만 면세량, 차인과세수확량, 세량, 납기내 납부 1할공제량, 납기내 징수세량(용량, 중량), 납세인원(과세분, 비과세분, 합계)

- (3) 제2분기 갑류농지세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  
기준수확량, 2.5k1미만 면세량, 차인과세수확량, 세량, 납기내 납부 1  
할공제량, 납기내 징수세량(용량, 중량), 납세인원(과세분, 비과세  
분, 합계)
- (4) 제1분기 을류농지세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  
6만원 이하의 금액(소득금액, 세액), 6만원 초과와 금액(·), 18만원  
초과의 금액(·), 합계(소득금액, 세액, 납세인원)
- (5) 제2분기 을류농지세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  
6만원 이하의 금액(소득금액, 세액), 6만원 초과와 금액(·), 18만원  
초과의 금액(·), 합계(소득금액, 세액, 납세인원)

###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삭제 : 가-1) - (2), (3), (4), (5)

추가 : 지방세 분포 상황

#### 2) 부과실적

변경 : 갑류농지세 부과상황이 다음과 같이 변경

##### (1) 제1분기 갑류농지세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

-대맥

과세수확량, 과세량, 과세최저한, 차인과세량, 세량, 납기내납부 1할  
공제, 납기내 징수세량, 납세인원, 작년 12월말 현재 농가호수

-나맥

上同

##### (2) 제2분기 갑류농지세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

과세수확량, 자료통보로 인한 증, 차인과세수확량, 과세최저한, 차인과  
세수확량, 세량, 납기내 납부 1할 공제량, 납기내 징수세량, 납세인원,  
작년 12월말 현재 농가호수

추가 : -제1기분 갑류농지세 납세별 인원표(대맥, 나맥)(총괄, 시세,  
군세)

-제2기분 갑류농지세 납세별 인원표(총괄, 시세, 군세)

-제1기분 을류농지세 납액별 인원표(총괄)

-제2기분 을류농지세 납액별 인원표(총괄)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 2) 부과실적

삭제 : - 갑류농지세에서 대맥, 나맥의 구분이 없어짐

- 갑류농지세에서 시세, 군세가 없어짐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 :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

-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내용이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의 형태로 변경.

## 2) 부과실적

추가 : - 갑류농지세의 항목으로 소액불징수분이 추가

- 을류농지세의 항목으로 기초공제액, 소액불징수가 추가

- 을류농지세 작물별 부과상황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추가 : 도세 징수상황, 시세 징수상황, 군세 징수상황

변경 : 지방세 분포상황 → 시군구별 징수상황

## 2) 부과실적

삭제 :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부과상황

**사. 1973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갑류농지세와 을류농지세의 1, 2기 구분이 사라짐.

### 아.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갑류농지세가 다음과 같이 변경

##### (1) 갑류농지세총괄

합계(세액, 인원), 금납제(대상지역, 세액, 인원), 물납제(세액, 인원)

##### (2) 갑류농지세(금납분)

기준수확량, 법 제206조(재해감면)경감량, 기타감면량, 과세수입 금액, 기초공제액 미만 수입금액, 차인과세 수입금액, 산출세액, 소액불징수, 세액, 납세인원(과세분, 기초공제액 미만, 계), 작년도말 농가호수

##### (3) 갑류농지세(물납분)

##### (4) 납세별인원표(금납분)

##### (5) 납세별인원표(총괄)

### 자.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 차.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 카. 1985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변경

##### (1) 부과상황(총괄, 시부, 군부)

면적, 수입금액, 소득금액, 출입경작통보로 인한 증감(면적, 소득금액), 기초공제(기초공제액, 인원), 과세소득금액, 산출세액 및 납세인원(합계(세액, 인원), 중간예납, 수시부과, 보통징수), 소액불징수(세액, 인원)

- (2) 세액단계별 납세인원표(총괄, 시부, 군부)
- (3) 세액별 인원표(총괄, 시부, 군부)
- (4) 소득원별 과세상황  
과세분(면적,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액, 납세인원), 비과세분(·)
- (5) 경작규모별(벼) 납세인원(총괄, 시부, 군부)

#### 타.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 변경 : -세액단계별 납세인원표 → 과표단계별 납세인원 현황  
-소득원별 과세상황
- 합계(과세분, 비과세분)
  - 농지소득(과세분, 비과세분)
  - 임대소득(과세분, 비과세분)
- 추가 : 벼작물 재해감면 상황(총괄, 시부, 군부)

#### 파. 1987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 삭제 : 벼작물 재해감면 상황(총괄, 시부, 군부)

#### 하. 199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 추가 : 벼작물 재해감면 상황(총괄, 시부, 군부)

#### 거.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 8. 屠畜稅 및 同 附加稅 資料의 變遷(1967~1994)

#### 가. 1967년의 도축세(동 부가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계(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도세(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조), 시세(·), 군세(·), 비교

(2) 시·도별 지방세 징수상황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3)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목별 신장

1966년 실적, 1967년 실적, 신장률

(4) 도세, 시세, 군세 세목별·연도별 징수액 비중

(5) 연도별 목표·조정·징수 대비

2) 부과실적

(1) 부과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

우(두수, 세액), 마(·), 돈(·), 합계(·), 1966년 실적, 신장률,  
1966년 목표액대비(목표액, 신장률)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삭제 : 가-1) - (2), (3), (4), (5)

추가 : 지방세 분포 상황

2)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의 전년도실적 대비 신장률, 목표액이 목표액과 부과실적 대  
비표로 변경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2) 부과실적

삭제 : 목표액과 부과실적 대비표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 :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징수상황

-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내용이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의 형태로 변경.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 도세 징수상황, 시세 징수상황, 군세 징수상황

변경 : 지방세 분포상황 → 시군구별 징수상황

####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시도별 부과상황에 두수(1972, 1971, 신장률), 세액(1972, 1971, 신장률)

-과세 물건별 부과상황에 두수(1972, 1971, 신장률), 세액(1972, 1971, 신장률)

#### 사.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부과상황에서 말(마) 항목이 삭제

#### 아.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도축세 부가세의 폐지)

##### 1) 징수실적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 자.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도세 부과상황이 삭제

#### 차. 1983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이 다음과 같이 추가<sup>1)</sup>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 카.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

1)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은 1977년부터 있었으나, 도축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발생한 것은 1983년이 처음이다.

## 9. 事業所稅 資料의 變遷(1977~1994)

### 가. 1977년의 사업소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징수상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 (2) 시·도별, 단체별 징수상황

#### 2) 부과실적

##### (1) 부과상황(총괄)

합계(인원, 세액), 종업원할(인원, 과세표준, 세액), 재산할(인원, 과세표준, 세액)

##### (2) 종업원할 세액규모별 사업소수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 (3) 재산할 세액규모별 사업소수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 (4)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 나. 197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종업원할 세액규모별 사업소수 → 종업원할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 다. 1983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 종업원할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 종업원할 납액별 인원표

- 재산할 세액규모별 사업소수 → 재산할 납액별 인원표

### 라. 1985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종업원할 납액별 인원표와 재산할 납액별 인원표  
→ 납액별 인원표(총괄, 종업원할별, 재산할별)

**다.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이 총괄, 시부, 군부로 구분됨  
-납액별 인원표가 다음의 형태로 변경  
○총괄      ○시부      ○군부

**바. 1989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의 종업원할 인원이 사업주, 종업원수로 세분됨

**사. 1992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 부과상황에 재산할 증과세가 추가

**아.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10. 遊興飲食稅 및 同 附加稅 資料의 變遷(1967~1977)**

**가. 1967년의 유흥음식세(동 부가세)에 관한 통계자료**

1) 징수실적

(1)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지방세계(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도세(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조), 시세(·), 군세(·), 비교

(2) 시·도별 지방세 징수상황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3)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목별 신장

1966년 실적, 1967년 실적, 신장률

(4) 도세, 시세, 군세 세목별·연도별 징수액 비중

(5) 연도별 목표·조정·징수 대비

2) 부과실적

(1) 부과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

제1종장소(요리점(과세표준, 세액, 인원), 카바레, 바, 소계), 제2종장소(고급음식점, 고급호텔, 고급주점, 소계), 제3종장소(음식점, 다방, 주점, 소계), 합계(과세표준, 세액, 인원), 가산세, 가산금, 1966년도 부과실적, 대비, 1968년도 목표액, 비율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삭제:가-1)-(2), (3), (4), (5)

추가:지방세 분포 상황

2) 부과실적

추가:유용음식세 목표액과 부과실적 대비표

변경:제1종, 제2종, 제3종 내의 항목들이 변경<sup>2)</sup>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징수상황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내용이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의 형태로 변경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도세 징수상황, 시세 징수상황, 군세 징수상황

변경:지방세 분포상황 → 시군구별 징수상황

---

2) 이하의 통계 내용에서도 종별 내용은 수시로 변경되나, 아래에서는 이를 생략함.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 추가 : -종별 부과상황
- 부과상황 대비

사.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 변경 : 부과상황의 항목이 다음으로 변경
- 과세표준, 세액, 인원 → 건수, 세액

아.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자.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1976년 유·홍음식세의 폐지로 징수실적만 있고 부과실적은 없음.

11. 都市計劃稅 資料의 變遷(1967~1994)

가. 1967년의 도시계획세에 관한 통계자료

1) 징수실적

자료 없음

2) 부과실적

(1) 부과상황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인원, 납기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1) 징수상황

합계, 도세징수액, 시세징수액, 군세징수액

(2) 지방세분포상황

2)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토지(과세표준액, 세액, 납세인원), 가옥, 합계

####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 : -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징수상황

-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내용이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의 형태로 변경

2)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이 총괄과 시군별 부과상황의 두 개로 나뉨.

####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 도세 징수상황, 시세 징수상황, 군세 징수상황

변경 : 지방세 분포상황 → 시군구별 징수상황

2) 부과실적

변경 : 시군별 부과상황이 시세, 군세의 두 개로 나뉨.

####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 부과상황에 인원(1972, 1971, 신장률), 세액(1972, 1971, 신장률)

#### 사.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 - 부과상황의 토지에 대한 항목으로 필수, 지적이 추가

- 부과상황의 가옥에 대한 항목으로 구수, 면적이 추가

#### 아.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2)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의 가옥 → 건물

**자.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합계(세액, 인원), 토지, 건축물

추가 :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 기타(·)

**차.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합계(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토지(필지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건물(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카.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12. 消防共同施設稅 資料의 變遷(1967~1994)**

**가. 1967년의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통계자료**

1) 징수실적

자료 없음

2) 부과실적

(1) 부과상황(총괄, 시분, 군분)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1) 징수상황

합계, 도세징수액, 시세징수액, 군세징수액

(2) 지방세 분포상황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2) 부과실적

삭제: 가-2)-(1)의 시분, 군분이 삭제

추가: 다음과 같은 부과상황이 추가

(1)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

3만원 이하(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3만원 초과(·), 15만원 초과(·), 30만원 초과(·), 합계(·)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징수상황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내용이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의 형태로 변경.

2) 부과실적

삭제: 가-2)-(1)의 총괄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도세 징수상황, 시세 징수상황, 군세 징수상황

변경: 지방세 분포상황 → 시군구별 징수상황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부과상황에 인원(1972, 1971, 신장률), 세액(1972, 1971, 신장률)

**사. 1973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합계(과표, 세액, 인원), 가옥분(소계(과표, 세액, 인원),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선박(과표, 세액, 인원)

### 아.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합계(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건물, 선박

추가 : -물건별(건물) 부과상황

계(구수, 과표, 세액, 인원),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물건별(선박) 부과상황

계(척수, 과표, 세액, 인원),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자.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징수실적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 차. 1977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물건별(건물, 선박) 부과상황

변경 :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합계(세액, 인원), 건축물, 선박

추가 :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 카. 1978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화재위험 건축물 현황

### 타.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총괄, 시세, 군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합계(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건물(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선박(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추가 : -건축물 과세표준액 및 인원현황(총괄, 시부, 군부)

-선박 과세표준액 및 인원현황(총괄, 시부, 군부)

파.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13. 地域開發稅 資料의 變遷(1992~1994)

가. 1992년의 지역개발세에 관한 통계자료

1) 징수실적

(1) 징수상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 시·도별, 단체별 징수상황

2) 부과실적

(1) 부과상황(총괄, 시부, 군부)

합계(세액계, 컨테이너(TEU, 세액)), 지하수(m<sup>3</sup>, 세액), 발전용수(m<sup>3</sup>, 세액), 지하자원(톤, 세액), 과세분(·), 비과세분(·)

(2) 자원별 과세상황

- 과세분

- 비과세분

(3)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나. 1994년 統計資料의 變更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14. (競走)馬券稅 資料의 變遷<sup>3)</sup>(1967~1994)

가. 1967년의 (경주)마권세에 관한 통계자료

1) 징수실적

(1)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3) 1992년까지의 마권세가 1993년부터 경주마권세로 바뀜.

지방세계(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도세(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조), 시세(·), 군세(·), 비고

(2) 시·도별 지방세 징수상황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목, 대조

(3)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목별 신장

1966년 실적, 1967년 실적, 신장률

(4) 도세, 시세, 군세 세목별·연도별 징수액 비중

(5) 연도별 목표·조정·징수 대비

2) 부과실적

(1) 부과상황

상반기(과세표준, 세액), 하반기(과세표준, 세액), 합계(과세표준, 세액)

### 나. 1968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삭제:가-1)-(2), (3), (4), (5)

추가:지방세 분포 상황

2) 부과실적

변경:부과상황의 항목 변경(목표액, 부과액, 비율)

### 다. 1969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지방세 단체별 징수상황

2) 부과실적

변경:부과상황의 항목 변경(과세표준액, 세액, 비고)

### 라. 1970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총괄, 도세, 시세, 군세의 4개의 표)

변경:-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 →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징수상황

-지방세(단체별) 징수상황의 항목 변경(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 마. 1971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추가 : 도세 징수상황

변경 : 지방세 분포상황 → 시군구별 징수상황

### 바. 1972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 -마권종류별 현황이 추가(단승식(발매매수, 발매금액, 세율, 마권세액), 복승식(·), 쌍승식(·), 계(·))

### 사. 1973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의 항목 변경

발매매수, 과세표준액, 세액, 발매매수(1972년, 1973년), 세액(1972년, 1973년), 비율  
세로항목(합계, 단승식, 복승식, 쌍승식)

### 아. 1975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이 두 개의 표로 정리됨

(1) 총괄

발매매수(1975년, 1974년), 세액(1975년, 1974년, 신장률)

(2) 부과내역

발매매수, 과세표준액, 세액

### 자. 1976년 통계자료의 변경

1) 징수실적

변경 : 목표액과 조정액 → 부과액

2) 부과실적

삭제 : 총괄 삭제

변경 : 부과내역이 총괄로 제목 변경

### 차. 1983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부과상황 항목에서 쌍승식이 연승식으로 변경

### 카.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 타. 1988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 파. 1989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추가 : -서울특별시 현황

-경기도 현황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 하. 1991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삭제 : -서울특별시 현황

-경기도 현황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 거.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 1) 부과실적

부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 15. 土地過多保有稅 資料의 變遷(1988~1989)

### 가. 1988년의 토지과다보유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징수상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 (2) 시·도별, 단체별 징수상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 부과실적

(1) 부과상황(총괄, 시부, 군부)

필지수, 면적, 과세표준액, 인원, 세액

(2) 과표단계별 과세상황(총괄, 시부, 군부)

합계(건수, 면적, 세액),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7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3) 면적별 과세상황(총괄, 시부, 군부)

합계(인원, 면적, 세액), 330㎡ 이하(·), 660㎡ 이하(·), 1650㎡ 이하(·), 2310㎡ 이하(·), 3300㎡ 이하(·), 16500㎡ 이하(·), 33000㎡ 이하(·), 33000㎡ 초과

(4) 지목별 과세상황(총괄, 시부, 군부)

합계(필지, 면적),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기타(·)

(5) 납액별 인원현황(총괄, 시부, 군부)

계, 1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나. 1989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이 다음과 같이 추가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다. 1990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토지과다보유세의 폐지로 부과상황이 없음<sup>4)</sup>

4) 1989년(1차) 지방세법 개정(1989. 6. 16 법률 제4128호)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토지과다보유세는 폐지됨.

## 16. 綜合土地稅 資料의 變遷(1990~1994)

## 가. 1990년의 綜合토지세에 관한 통계자료

## 1) 징수실적

## (1) 징수상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 (2) 시·도별, 단체별 징수상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 2) 부과실적

## (1) 부과상황(총괄)

납세인구, 물건수, 면적, 총과표, 세액

## (2) 납세의무자 유형별 과세현황(총괄)

납세인구, 물건수, 면적, 총과표, 세액

- 개인에 대한 과세현황

- 법인에 대한 과세현황

- 기타단체에 대한 과세현황

## (3) 형태별·유형별 과세현황(총괄)

합계(물건수, 면적, 과표), 개인(·), 법인(·), 기타단체(·)

\* 세로항목 : 합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 종합합산 과세대상(총괄)

○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

○ 공장용지 중 종합합산대상 토지

○ 종합합산대상 농지

○ 목장용지 중 종합합산대상 토지

○ 종합합산대상 임야

○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초과토지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 잡종지

○ 기타 토지

- 별도합산 과세대상

- 분리 과세대상(총괄)

○ 입지기준 면적 내의 공장용지

○ 분리과세대상 농지

○ 목장용지 중 분리과세대상

- 임야 중 분리과세대상
- 골프장용 토지
- 별장용 토지
- 주거용토지 중 기준초과토지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공급용 토지
- 대한주택공사의 분양 또는 임대할 토지
-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 발전시설용 토지
- 광구 내의 토지
- 고급오락장용 토지
- 기타 토지

(4) 지목별·토지형태별 과세상황

-종합합산 과세대상(총괄)

합계(물건수, 면적, 과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기타(·)

-분리 과세대상(총괄)

上同

(5)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종합합산 과세대상(총괄)

합계(인원, 면적),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 개인에 대한 과세현황
- 법인에 대한 과세현황
- 기타단체에 대한 과세현황

-별도합산 과세대상(총괄)

上同

-분리 과세대상(총괄)

上同

(6) 세액단계별 납세인원 현황(총괄, 시부, 군부)

합계, 1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7) 비과세 감면현황

- 합계  
합계(물건수, 면적, 과표), 개인(·), 법인(·), 기타단체(·)
- 국등에 대한 비과세  
上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上同
- 과세면제 대상 법인  
上同
- 과세면제 대상 토지  
上同
- 세액감면 대상 법인  
上同
- 세액감면 대상 토지  
上同
- 창업중소기업 감면  
上同
- 근로자 주거안정 감면  
上同
- 외국인 투자기업 면제  
上同
- 해저광물탐사 면제  
上同
- 특별감면조례 감면  
上同

(8)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나. 1992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 다음과 같은 표의 세부적인 내용이 생략

(1) 형태별·유형별 과세현황(총괄)

합계(물건수, 면적, 과표), 개인(·), 법인(·), 기타단체(·)

\* 세로항목 : 합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총괄)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총괄)

(2) 지목별·토지형태별 과세상황

-종합합산 과세대상(총괄)

합계(물건수, 면적, 과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기타(·)

-분리 과세대상(총괄)

다.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지방세 체납세 현황

17. 담배消費稅(담배販賣稅) 資料의 變遷(1985~1994)

가. 1985년의 담배판매세에 관한 통계자료

1) 징수실적

(1) 징수상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 시·도별 징수상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 부과실적

(1) 월별 징수현황(총괄, 시부, 군부)

(2) 담배종류별 판매상황(총괄, 시부, 군부)

나. 1986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변경: 월별 징수현황 → 월별 부과실적(과세표준, 세액)

다. 1988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합계(건수, 세액),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특별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라. 1989년 담배소비세 통계자료의 변경<sup>5)</sup>

1) 부과실적

변경 : -담배종류별 판매상황 → 담배급별 판매현황(합계, 국산담배, 외산담배)

-월별 부과실적의 과세표준 → 수량

마. 1991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삭제 : 지방세 비과세 감면상황

바. 1994년 통계자료의 변경

1) 부과실적

추가 : 지방세 체납세 현황

---

5) 1988년(2차) 지방세법 개정(1988. 12. 26 법률 제4028호)에서 담배판매세가 폐지되고 담배소비세가 신설됨.

## 附錄 V. 主要國의 租稅關聯 統計資料

### 1. 美國의 租稅關聯 統計資料 分析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1991

##### 가. 특징

- 1) 전반적으로 세액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2) 대부분의 표가 총소득의 크기에 따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전체 16개의 표 중에서 11개가 총소득의 크기에 따른 표이다).
- 3) 통계에 관한 표가 차지하는 분량은 전체 책의 분량에 비해 적은 편(전체 160페이지 중에서 46페이지)이며, 신고양식과 그에 대한 설명이 많은 양(총 62페이지)을 차지하고 있다<sup>6)</sup>.
- 4) 기본 통계표에는 당해연도의 자료만이 있으며, 어떠한 표에도 과년도 통계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단, section 1에서 과거 몇년의 자료를 함께 표기한 표가 있다).

##### 나. 구성

- 소개와 범의 변화
- 표본에 대한 설명
- 기본 통계표
- 항목에 대한 설명
- 신고양식과 설명
- 목록

---

6) 전체 책의 활자에 비해 통계 표의 활자 크기가 작으므로 단순히 분량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듯함.

## 다. 기본적인 통계

### 1) 신고소득과 소득의 원천(returns filed and sources of income)

(1)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와 누적크기에 따른 선택된 소득(selected income)과 세금 항목

→ 소득의 크기별, 저소득층부터의 누적크기별, 고소득층부터의 누적크기별로 과세신고액, 과세소득, 공제 후 소득세, 총소득세를 보이고 있다.

(2) 총신고액(all returns) : 조정된 총소득, 면세(exemption), 감면(deductions)과 세금 항목

→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 배우자 유무(공동신고한 부부, 개별적으로 신고한 부부, 독신자)에 따라서 신고자의 수, 면세, 감면, 과세가능한 소득, 총소득세를 보이고 있다.

(3) 총신고액 : 소득원천별, 배우자 유무별 조정, 감면, 공제(credits), 세금 항목

(4) 총신고액 :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 소득원천, 조정, 세금 항목

→ 소득원천별로 소득액과 납세자수를 구분하고 이를 조정된 총소득이 크기별로 표시하고 있다.

(5) 1040EZ returns으로부터 :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 소득원천과 세금 항목

(6) 1040A returns으로부터 :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 소득원천, 감면과 세금 항목

→ 원천징수와 환급이 표시되어 있음.

### 2) 면세와 항목별 감면(exemptions and itemized deductions)

(1) 감면항목을 가진 신고액 :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로

→ 소득원천, 조정, 종류에 따른 감면항목, 면세를 소득크기별 납세자수와 양으로 나타내고 있다.

(2) 감면항목을 가진 신고액 : 배우자 유무별

→ 소득원천, 조정, 감면, 공제를 배우자 유무별로 정리

(3) 총신고액 : 면세 종류와 건수

→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로 면세 종류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4) 총신고액 : 면세 종류와 건수

→ 배우자 유무별로 면세 종류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 3) 세금 산정(tax computations)

(1) 수정된 과세가능소득을 가진 신고액 : 조정된 총소득과 세금 항목

- 세금 산정의 종류별,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로 소득세를 나타내고 있다.
- (2) 총소득세를 가진 신고액 : 조정된 총소득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된 총소득세
  - 총소득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로 나타내고 있다.
- (3) 총신고액 : 세금의무(tax liability), 세액 공제, 납부액
  -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로 세액공제의 항목들을 자세히 표시하고 납부액(tax payments)을 나타내고 있다.
- (4) 수정된 과세가능소득을 가진 신고액 : 한계세율과 세율에 의해 분류된 세액
- (5) 수정된 과세가능소득을 가진 신고액 : tax generated by rate
  - 조정된 총소득의 크기별로
- (6) 수정된 과세가능소득을 가진 신고액 : 과세가능한 소득과 각 세율로 분류된 세액
  - 배우자 유무별로

##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1991

### 가. 특징

- 1) 세부적인 산업별 자료, 주요산업별 자료와 총자산의 크기별 자료를 통해 법인세 현황을 표시하고 있다.
- 2) 공제 항목들에 대해 각 표에서 세부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 3) 기업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s)와 소득명세서(income statements)에 의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표에 각 산업별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료가 잘 나타나고 있다(대차대조표나 소득명세서에 의한 자료가 전체 25개의 표 중에서 19개를 차지하고 있다).
- 4) 크게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과 순소득에 대한 신고액으로 구분하여 표를 구성하고 있다.
- 5) 신고양식에 따라 각 표를 나타내고 있다.
- 6) 기본 통계표에는 당해연도의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
- 7) 통계에 관한 표가 차지하는 분량은 전체 책의 분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전체 300페이지 중에서 146페이지)하고 있으며, 신고양식과 그에 대한 설명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81페이지)하고 있다.

## 나. 구성

### 1) 소개

- (1)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returns) : 총자산의 크기별로
- (2)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 회계기간에 따라

### 2) 법의 변화와 규제

### 3) 표본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한계

### 4) 기본 통계표

### 5) 항목에 대한 설명

### 6) 신고양식과 설명

## 다. 기본적인 통계

### 1) 산업과 크기에 의한 소득과 재무 자료(income and financial data by industry and size)

- (1)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 신고수, 징수액, 비용, 순소득, 결손, 총소득세, 공제(credits), 총자산, 감가가 일어나는 자산, 감가상각 감면(deduction), 변이계수(coefficient variation)

→ 세부적인 산업별로 이상의 항목들을 표시하고 있으며, 공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별로 정리하고 있다.

- (2)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등

→ 총자산의 크기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receipts),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3) 순소득에 대한 신고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등

→ 총자산의 크기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4)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 선택된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와 세금항목

→ 총자산의 크기별로, 산업별로 표 1의 항목들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5)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 선택된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와 세금항목

→ 사업영수증(Business Receipts)별로, 산업별로 표 1의 항목들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6)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 선택된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와 세금 등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7) 순소득에 대한 신고 : 선택된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와 세금 등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2) 선택된 대상(selected subjects)

- (1)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신고양식 1120A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세금 등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2) 순소득에 대한 신고, 신고양식 1120A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세금 등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3) 가동중인 외국기업의 신고액, 신고양식 1120F : 소득명세서, 선택된 세금항목  
→ 주요산업별로 총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4) 순소득에 대한 신고, 신고양식 1120F : 소득명세서, 선택된 세금항목  
→ 주요산업별로 총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5)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신고양식 1120S, 1120-REIT와 1120-RIC 이외의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세금 등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6) 순소득에 대한 신고, 신고양식 1120S, 1120-REIT와 1120-RIC 이외의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세금 등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7) 가동중인 S기업의 신고액, 신고양식 1120S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8) 순소득에 대한 신고, S기업, 신고양식 1120S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9)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신고양식 1120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10) 순소득에 대한 신고, 신고양식 1120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 주요산업별로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11)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 총수령액, 순소득, 법률상 특별 감면, 소득세, 선택된 공제와 세금납부 항목  
→ 회계기간별로 이상의 항목들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12)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통합신고액 :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세금 등  
→ 선택된 산업 분류에 따라 자산, 부채, 수령액, 감면 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13)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 선택된 산업 분류에 따라 세금종류별 신고자수, 배당항목, 순소득 (결손), 법률상 특별 감면, 과세되는 소득, 소득세, 공제와 납부액을 표시하고 있다.
- (14)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신고양식 1120S, 1120-REIT와 1120-RIC 이의
  - 선택된 산업 분류에 따라 신고자수, 선택된 소득, 세금, 공제, 일반적인 공제 항목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 (15)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신고양식 1120S, 1120-REIT와 1120-RIC 이의
  - 선택된 산업 분류에 따른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 (16) 가동중인 기업의 신고액, 신고양식 1120S, 1120-REIT와 1120-RIC 이의
  - 공제후 총소득세의 크기별로 신고자수와 세금항목들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 (17)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의 신고액
  - 주요산업별로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세금 등을 나타내고 있다.
- (18)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의 순소득에 대한 신고
  - 주요산업별로 대차대조표, 소득명세서, 세금 등을 나타내고 있다.

## Source Book 1989 :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 가. 특징

산업분류코드(Division industry code), 주요산업코드(Major industry code), 세부산업코드(Minor industry code)별로 신고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령액, 총감면, 순소득, 총소득세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각 코드 하나하나에 대해 이러한 표를 제시하고 있음).

## 2. 英國의 租稅關聯 統計資料 分析

### Inland Revenue Statistics 1993

1970년부터 the Board of Inland Revenue에 의해 발행

### 가. 내용의 특징

- 1) 각 section의 표에 대해 그 표의 자료가 나오게 된 경위와 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 2) 특히 자료를 각 계급별로 정리한 것도 많으며, 공제, 감면, 면제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 3) 전반적으로 세액 자체의 통계보다는 그 세액의 출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4) 시계열 자료의 경우 경상가격과 실질가격을 같이 표현한 표도 있다.
- 5) 부의 분포에 대해 따로 한 section을 마련하고 있다.
- 6) 표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경제적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나. 구 성

각 section은 Note와 표(Table), 차트(Chart)로 구성되어 있다.

### 1) Note

section의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크게

- Introductory Note

- section과 관련된 조세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공제제도, 징수방법 등)

- 자료의 원천

- 표와 차트에 대한 내용 소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Table

표에 따라 수십 년의 시계열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몇년치만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분기별, 월별 자료를 제시하는 표도 있으며, 당해연도 자료만을 제시하기도 한다. 시계열 자료의 경우 경상가격과 실질가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 3) Chart

표에 나타난 자료를 Chart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다. 통계자료의 내용

### 1) 일반(General)

(1) 내국세 수입(Inland Revenue)이 중앙정부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내국세의 세목별 순수입

○ 내국세 수입에서 주요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

(3) 내국세의 세목별 월별(분기별) 수입

(4) 납세 인원

(5) 조세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6) 세 경감을 통한 지출에 대한 추정

## 2) 소득세(Income tax)

(1) 납세인원과 소득세 의무(liabilities)

→ 소득세 납세인원을 여러 구분(남편, 아내, 65세 미만·이상 등)에 의해 표시

(2) 지방별 소득세 납세인원

(3) 총소득세 비율의 점유율

→ 총소득세에서 각 계층별(상위 1%, 상위 5% 등)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4) 소득세 납액별 인원 비중

(5) 면세점과 손익분기점

→ 미혼, 자녀가 없는 기혼, 자녀가 2인 기혼의 면세점(thresholds)과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의 변화

(6) 소득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임

(7)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세 의무

(8)(9) 하위, 기본, 상위 세율의 납세자의 소득세 의무

(10) 소득원의 종류에 따른 소득세 수입

(11) PAYE에 따른 산업별 소득세 공제

## 3) 개인소득(Personal income)

(1) 세전·후의 소득분포(납세자)

(2) 세전·후의 소득분포

(3) 소득과 공제

(4) 근로소득(earned income)

(5) 투자소득(invest income)

(6) 공제

(7) 산업별 자영소득(self employment income)

(8) 자영소득

(9) 지방별 소득과 세금의 분포

(10) 노인의 지방별 소득과 세금의 분포

(11) 지방별 소득과 세금의 분포

## 4) 현물로 얻는 혜택(또는 현물소득)과 비용지불(Taxable benefits in kind and expenses payments)

(1) 과세대상인 현물혜택과 비용지불(1990~1991, 현물수령자수)

- (2) 과세대상인 현물혜택과 비용지불(수입의 크기에 따라)
  - (3) 과세대상인 현물혜택과 비용지불(수입크기에 따라 주요 혜택에 대하여)
  - (4) 과세대상인 현물이익과 비용지불(차량종류에 따라 회사차에 대한 분석)
  - (5) 과세대상인 현물이익과 비용지불(연도별 과세대상인 혜택과 수령자의 수)
- 5) 모게이지 이자 감면(Mortgage interest relief)
- (1) 모게이지 이자 감면(감면 비용과 Option Mortgage Scheme)
  - (2) 모게이지 이자 감면(감면 비용과 수혜자의 수 : Option Mortgage Scheme 지출을 제외)
  - (3) 모게이지 이자 감면(지방별, 지역별 감면 비용과 수혜자의 수 : Option Mortgage Scheme 지출을 제외)
  - (4) 모게이지 이자 감면(총소득의 범위에 따른 모게이지 이자 감면)
- 6) 종업원 지주제도와 이윤과 연계된 지불(Employee share schemes and profit-related pay)
- (1) 종업원 지주제도
  - (2) 이윤과 연계된 지불 제도(산업별 제도의 수)
  - (3) 이윤과 연계된 지불 제도(산업별 제도에 포함된 피고용자 수)
- 7) 연금(Pensions)
- (1) 피고용자에 대한 개인 연금(기여 종류에 따른 기여)
  - (2)(3)(4) 연금 기금 잉여(연금 기금 잉여의 크기에 따른 기금의 수)
  - (5) 연금 기금 잉여(잉여의 환원 방식에 따른 기금의 수)
  - (6) 직업 연금 제도(Occupational pension schemes)에 대한 감면 비용
- 8) 사업 확장 제도(Business expansion scheme)
- (1) 자금조달 방식과 기업의 종류에 따른 투자액과 기업 수
  - (2) 산업별 투자액과 기업 수
  - (3) 투자규모별 투자액과 기업 수
  - (4) 산업별, 투자규모별 투자액과 기업 수
  - (5) 지역별 투자액과 기업 수
  - (6) 지역별, 산업별 투자액과 기업 수
- 9) 개인저축과 주식투자에 대한 공제(Reliefs for personal savings and equity investments)
- (1) 개인주식계획(Personal equity plans)이 적용된 수와 투자액과 plan 당 평균투자액
  - (2) 지분형태에 따른 plan의 기금가치

(3) 면세 저축의 기관별 수와 금액

10) 자선에 대한 기부(Charities)

(1) 총기부액과 세액 감면의 비용

(2) 기부자 종류별 기부 수와 환급

Gift Aid를 분기별로 표시

(3) Gift Aid 이전의 기업에 의한 기부

(4) 환급과 세액 감면

(5) Payroll giving scheme에서 기증자의 수, 기증액과 감면

11) 법인세(Corporate taxation)

(1) 기업군별 법인세와 ACT를 포함한 법인세

(2) 기업군별 소득, 공제와 세수

(3)(4) 산업별 법인세

(5) 세액 크기별 법인세(1991-92~1992-93)

(6) 산업별 법인세(1991-92~1992-93)

(7) 세액 크기별 법인세 납세자수

(8) 법인세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 : 총괄

(9) 법인세 산업별 자본공제

(10) 법인세 분포와 ACT납부(payment)

(11) 연간납부와 소득세의 세부상황

(12)(13) 산업별 분포와 연간납부

(14) UK 석유·가스 생산에 따른 정부수입

(15) 석유·가스 생산에 따른 이윤

(16) 석유수입세가 부과된 석유·가스 광구

12) 상속세(Inheritance tax)<sup>7)</sup>

(1) 상속세 및 자본거래세 수입의 추계

(2) 사망연도에 의한 수입

(3) 면제(exemptions)와 감면(reliefs)

(4) 순유산과 과세가능한 순가치의 크기에 따른 유산 건수

(5) 유언에 의해 기록된 유산

(6) 유산 크기에 따른 통계

(7) 성별, 나이별, 배우자 유무에 따른 통계

---

7) 자본거래세를 포함한 것임.

- (8) 자산가치별 discretionary trusts의 자산
- (9) 자산종류별 discretionary trusts의 자산
- 13) 개인 부의 분포(Distribution of personal wealth)
  - (1) 확인된 부의 크기에 따른 개인의 부 추계(부의 종류별로) : 1989
  - (2) 자산승수법(estate multiplier method)과 대차대조표법에 의한 조정
  - (3) 확인된 부의 크기에 따른 개인의 부 추계(부의 종류별로) : 1991
  - (4) 확인된 시장거래 가능한 개인 부와 개인부분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추계의 조정 요약
  - (5) 시장거래 가능한 부의 성인인구에 따른 분포
  - (6) 시장거래 가능한 부와 직업에 따른 연금까지 포함한 부의 성인인구에 따른 분포
  - (7) 시장거래 가능한 부, 직업에 따른 연금과 주 연금까지 포함한 부의 성인인구에 따른 분포
- 14)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 (1) 자본이득세 부과(연도별)
  - (2) 자본이득세 부과(납세자 종류별)
  - (3) 납세자의 종류에 따라 부과가능한 순이득과 납세자수
  - (4) 납세자의 종류, 과세가능한 소득, 부과가능한 순이득에 따른 순이득과 납세자수의 추계
  - (5) 자산의 종류에 따른 매각 건수와 매각 가치 및 자본이득
  - (6) 자산종류와 자산보유기간의 길이에 따른 매각 건수
- 15) 인지세(Stamp duties)
  - (1) 순수령액의 분류
  - (2) particulars delivered의 수
  - (3) 주거 재산(residential property)에 대한 인지세(지역별)
- 16)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재산거래에 대한 개요(Survey of property transactions in England and Wales)
  - (1) 가격과 재산의 종류에 따른 재산거래
  - (2) 재산종류와 지역별 재산거래
  - (3) 재산매각자의 종류와 가격에 따른 재산거래
  - (4) 재산매입자의 종류와 가격에 따른 재산거래
- 17)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농지 가격(Agricultural land prices in England and Wales)
  - (1) 1980년 이후 토지의 평균가격 추세와 매각되는 토지

- (2) 토지보유와 토지종류, 토지크기에 따른 거래
  - (3) 매각자의 종류에 따른 거래
  - (4) 매입자의 종류에 따른 거래
  - (5) 가격대에 따른 거래량
- 18)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내국세에 의해 부과되지 않는 세(Nondomestic rating in England and Wales)
- (1) 재산종류별, 지역별 내국세에 의해 부과되지 않는 조세의 크기와 재산 전수
  - (2) 재산종류별 통계
  - (3) 가치의 크기에 따른 과세가능한 가치
  - (4) 과세목록의 변화
- 19) 부록(Appendices)
- (1) 소득세의 개인공제와 감면
  - (2) 소득세율의 변화
  - (3) 자본공제율의 변화
  - (4) 법인세율의 변화
  - (5) 자본이득세율의 변화
  - (6) 상속세 및 자본거래세율의 변화
  - (7) 인지세율의 변화
  - (8) 부차적인 세액공제와 감면의 비용
  - (9) 과세가능한 혜택과 비용지불
  - (10) 직업분류

### 3. 싱가포르의 租稅關聯 統計資料 分析

####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Annual Report, 1994*

##### 가. 특징

국세청(IRS)의 전반적인 업무와 소개를 전반부에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통계는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 1) 통계자료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연도별 자료는 없으며, 최근 3년의 자료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3) 통계표의 많은 부분이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 감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 4) 세액에 관한 자료는 징수분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공제, 면제 등의 자료는 비교적 미흡한 편이다.
- 5) 전반적으로 세액 자체에 대한 자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 나. 기본적인 통계

### 1) 징수

- (1) 정부 총수입과 국세청 징수액
  - 정부의 총수입에서 국세청의 조세 징수액의 비중을 보임
- (2) 세목별 징수액
  - 세목별 징수액만을 제시
- (3) 조세행정비용
  - 조세행정비용을 제시하고 총 징수액과의 비율을 제시

### 2) 소득세

- (1) 신고자 수
  - 신고자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그 수를 제시
- (2) 부과 징수
  - 납세자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그룹이 부과액과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
- (3) 신고불이행자 수
  - 신고불이행자 수와 벌금부과액
- (4) 소송 건수
  - 소송건수를 상·하급심별로 나타내고 벌금을 제시
- (5) 이의신청 건수
- (6) 세무조사 결과
- (7) 감사에 의한 벌금과 세금
- (8) 체납 소득세 분석
- (9) 부과건수와 순부과액
- (10) 납세자 종류별 부과액과 납세자 수
  - 납세자 종류별로 납세자, 과세표준과 부과액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제시
- (11) 과세 가능한 개인과 기업의 소득원 분석
- (12) 과세 가능한 소득과 공제액
- (13) 소득계급별 부과액과 납세자 수(개인)
- (14) 소득계급별 부과액과 납세자 수(기업)

(15) 거주자에 대한 소득계급별 세율

### 3) 재산세

(1) 재산의 수

→ 재산의 수의 증감을 제시

(2) 징수 재산세에 대한 분석

(3) 개인재산세에 대한 분석

→ 개인재산의 종류에 따른 징수액을 제시

(4) 재산종류에 대한 분석

→ 재산의 종류별 수를 제시

(5) 체납 재산세 분석

(6) 재산 평가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

(7) 평가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

(8) 재산의 가치평가 건수

(9) 재산세 면제

→ 재산세 면제 건수와 액수를 제시

### 4) 기타 세목

(1) 인지세 징수

(2) 도박에 대한 세금징수

(3) 개인 복권세

(4) 부동산세

(5) 자선단체 등록 신청건수

(6) GST 신고에 대한 준응도

(7) GST 등록자의 산업별 분포

(8) GST 등록자의 기업종류별 분포

→ 등록자 수를 기업종류별(주식회사, 자영업자 등)로 제시

## 4. 日本의 租稅 關聯 統計資料 分析

(國稅廳 統計年報書 平成 5年度(1993)版)

### 가. 특징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세통계연보』와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의 내용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소득세의 경우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를 구분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소득세에서 소득계급별 자료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에

도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자본금계급별·업종별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도 재산의 가격계급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3) 신고소득세의 경우 표본 조사결과를 소득계급별, 소득자별로 제시하고 법인세의 경우 회사 표본 조사결과를 자본금계급별로, 업종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4) 원천소득세의 경우에 민간급여실태 통계 조사결과를 통해 급여자수와 금액 등을 종류별로 자세히 제시하며, 급여계급별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 나. 구 성

- (1) 平成 5년도 통계조사결과의 개요
  - 제1~5편에서 다룰 통계들을 도표와 간략한 표로 제시하고 주요 통계표의 조사대상기간과 조사시점에 대해 제시
- (2) 제1편 총괄편
- (3) 제2편 직접국세편
- (4) 제3편 간접국세편
- (5) 제4편 징수편
- (6) 제5편 기타
- (7) 부록

## 다. 기본적인 통계

- 1) 제1편 총괄편
  - (1) 조세 또는 인지수입
    - 국세징수금 정리자금 징수제액
      - 세목별로 징수결정제액, 수납제액, 불납결손액, 환부금지불결정제액 등을 제시
    - 결산액(일반회계분)의 연도별비교
    - 국세수입구성(직접세, 간접세 등)의 연도별비교
    - 국세수입구성(직접세, 간접세 등)의 국제비교
    - 세출 또는 세입에 대한 조세수입의 연도별비교
    - 세출 또는 세입에 대한 조세수입의 국제비교
  - (2)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의 연도별비교
    -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 (3) 징세비용

- 국세의 징세비용의 연도별비교
- 지방세의 징수비용의 연도별비교

## (4) 국세청기구도

## (5) 관구표

## 2) 제2편 직접국세편

## (1) 신고소득세

## - 과세상황

## ① 신고 및 처리상황

→ 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증액경정, 감액경정, 경정청구, 이의신청결정 등을 납세인원, 총소득금액, 신고납세액, 소득자별 내역(영업소득자, 농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5년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증가산세를 제시하고 있다.

② 과년도(既往年度) 과세상황<sup>8)</sup>

→ 平成 3, 4년의 신고 또는 처리에 의한 증감차액과 가산세의 증감차액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면제상황

→ 법률에 따른 감면 상황을 인원, 총소득금액, 경감 또는 면제세액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시도(都道府縣)별 과세상황

## - 소득계급별 인원

## ① 소득자구분별 인원

→ 소득계급별로 합계소득(자영소득자, 농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소득자구분별 인원의 연도(累年)별 비교

→ 平成 2, 3, 4년의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 ③ 청색신고자

→ 청색신고자수를 소득계급별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시도별 인원

→ 소득계급별 자료를 시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8) 일본식 표현을 적당히 우리나라에 맞게 고친 경우에는 괄호 속에 원래의 일본식 표현을 명기하였음.

— 소득종류별 인원, 소득금액

① 소득종류별 내역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급여소득, 종합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분리단기양도소득, 분리장기양도소득, 주식 등의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등의 인원, 소득금액, 신고납세액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업종별 내역

→ 영업소득(각종 상품소매업, 음식료품소매업, 가구소매업 등), 기타사업소득(축산수산업 등)의 인원, 소득금액, 신고납세액을 제시하고 있다.

③ 소득종류별 인원, 소득금액의 연도별 비교

→ 위 ①의 소득종류별 내역을 인원,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平成 1, 2, 3, 4년의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④ 시도별 인원, 소득금액

→ 위 ①의 내용을 시도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청색신고상황

① 영업·기타사업소득자의 청색신고상황

→ 신고소득세 납부자수와 청색신고자수를 비교하고 있다.

② 平成 5년분 신고소득세의 청색신고의 주요특전

— 신고소득세 표본 조사결과

① 총괄표

→ 소득계급별과 소득자별로 합계소득(인원, 금액), 소득공제액, 과세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원천징수세액, 신고납세액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납세자 평균치에 의한 총괄표

→ 소득계급별과 소득자별로 합계소득, 소득공제액, 과세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원천징수세액, 신고납세액을 제시하고 있다.

③ 소득종류별표

→ 소득계급별과 소득자별로 소득종류별 인원,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④ 소득공제표

→ 소득계급별과 소득자별로 각종 공제의 인원,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세액공제표

→ 소득계급별과 소득자별로 각종 공제의 인원,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 ⑥ 원천징수납액표

→ 소득계급별과 소득자별로 급여소득자와 그의 소득자의 원천징수 인원과 세액을 제시하고 있다.

## ⑦ 전문직종자

→ 소득계급별과 소득자별로 전문직종자를 청색신고자와 그 외의 자로 나누어 납세자수와 공제액 등을 제시하고 있다.

## (2) 원천소득세

## - 과세상황

## ① 과세상황

→ 6년간의 징수세액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산세상황

→ 불납부 가산세와 증가산세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원천징수 의무자수

→ 6년간의 원천징수 의무자수를 이자소득, 급여소득 등으로 제시

## ④ 이자소득 등의 과세상황

→ 공채, 사채, 저축 등에 대해 과세분, 비과세분을 제시

## ⑤ 배당소득의 과세상황

→ 배당에 대한 일반과세분, 비과세분, 원천분리과세적용분을 제시

## ⑥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의 과세상황

## ⑦ 급여소득, 퇴직소득의 과세상황

## ⑧ 급여소득, 퇴직소득의 과세상황의 연도별 비교

## ⑨ 보수·요금 등의 과세상황

## ⑩ 비거주자 등의 과세상황

## ⑪ 시도별 과세상황

## - 민간급여실태 통계 조사결과

## ① 원천징수 의무자수, 급여소득자수

→ 사업소규모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제시

## ② 급여액의 연도별 비교

→ 연도별로 급료·수당, 상여금, 급여를 총액과 평균으로 제시하고 평균연령과 평균근속연수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 ③ 급여계급별 급여소득자수, 급여액
  - 위 ②의 내용을 급여계급별로, 성별로 제시
- ④ 지방국세청(國稅局)별 급여소득자수, 급여액
  - 위 ②의 내용을 지방국세청별로 제시
- ⑤ 급여소득자수, 급여총액 및 세액의 연도별 비교
- ⑥ 급여계급별 급여소득자수, 급여총액 및 세액

(3) 법인세

- 과세상황

- ① 현 사업연도분 과세상황
  - 법정사업연도분과 청산확정분의 소득금액, 세액 자료 6년분을 제시
- ② 과년도 사업 과세상황
- ③ 법인수 상황
  - 법인 종류별로 법인수와 소득금액을 제시
- ④ 가산세 상황
  -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중가산세 건수와 금액 자료 6년분을 제시
- ⑤ 시도별 과세상황
  - 위 ①의 내용을 시도별로 제시
- ⑥ 시도별 법인수, 소득금액
  - 위 ③의 내용을 시도별로 제시

- 법인수

- ① 결산기별 보통법인수
  - 결산기별과 자본금계급별 법인수 6년분을 제시
- ② 업종별 보통법인수
  - 업종별·자본금계급별 법인수를 제시
- ③ 시도별 보통법인수
  - 시도별·자본금계급별 법인수를 제시

- 회사 표본 조사결과

- ① 총괄표
  - 자본금계급별·업종별로 법인수, 자본금액, 영업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조사소득금액, 산출세액 등을 제시

- ② 이익 및 결손상황
  - 자본금계급별·업종별로 이익, 결손을 제시
- ③ 영업수입금액 및 소득률
  - 자본금계급별, 업종별로 제시
- ④ 익금처분
  - 자본금계급별·업종별로 지불배당, 사내유보 등을 제시
- ⑤ 교제비, 기부금, 예비금(引當金), 감가상각비
  - 자본금계급별·업종별로 제시
- ⑥ 소득계급별 법인수
  - 자본금계급별·업종별로 결손, 이익을 낸 기업수를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제시
- ⑦ 자본금계급별의 同非별·청백별·조직구분별 법인수
  - 자본금계급별로 동족회사, 비동족회사, 청색, 백색의 법인수를 제시
- ⑧ 업종별·자본금계급별 법인수
  - 자본금계급별로 업종별 법인수를 제시

#### (4) 상속세

##### -과세상황

- ① 과세상황
- ② 과세상황의 연도별 비교
- ③ 지방국세청별 과세상황
- ④ 신고 및 처리상황
- ⑤ 가산세상황

##### -상속재산 가격계급별

- ① 인원, 과세가격, 세액
- ② 법정상속인원별 피상속인수
- ③ 지방국세청별 피상속인수

##### -상속재산 종류별

- ① 피상속인수, 재산가액

#### (5) 증여세

##### -과세상황

- ① 과세상황
- ② 과세상황의 연도별 비교
- ③ 가산세상황

- ④ 신고 및 처리상황
- ⑤ 지방국세청별 과세상황
- 증여재산 가격계급별
  - ① 인원, 과세가액, 세액
  - ② 지방국세청별 인원
- 증여재산 종류별
  - ① 증여재산취득자(受贈)인원, 재산가액
- (6) 지가세
  - 과세상황
    - ① 과세상황
    - ② 가산세상황
    - ③ 지방국세청별 과세상황
  - 과세가격
    - ① 과세가격상황
    - ② 과세가격계급별
  - 법인종류별 및 자본금계급별
    - ① 업종별
    - ② 자본금계급별
- (7) 유가증권취득(取引)세
  - ① 과세상황
  - ② 가산세상황
  - ③ 증권회사수
  - ④ 지방국세청별 과세상황
- 3) 제3편 간접국세편
  - (1) 소비세
    - 과세상황
    - 세관분 과세상황
    - 시도별 과세상황
      - ① 개인사업자
      - ② 법인
      - ③ 합계
  - (2) 주세
    - 주세관계총괄표
      - ① 주세관계총괄표

## -과세상황

- ① 과세상황
- ② 세관분 과세상황
- ③ 시도별 과세상황

## -製成수량

- ① 제성수량
- ② 시도별 제성수량

## -판매(소비)수량

- ① 주류판매(소비)수량
- ② 시도별 판매(소비)수량

## -면허장 수

- ① 주류제조 면허장 수
- ② 酒母 및 거르지 않은 술 제조장 수
- ③ 주류판매업 면허장 수 및 주류판매업자 수
- ④ 면허장 수의 연도별 비교
- ⑤ 시도별 면허장 수

## (3) 소비세, 주세 이외의 간접세 각표

## -담배세

- ① 과세상황
- ② 면제상황
- ③ 제조장 수

## -휘발유세 및 지방도로세

- ① 과세상황
- ② 세관분 과세상황
- ③ 면제상황
- ④ 관계장 수
- ⑤ 시도별 과세상황

## -석유가스세

- ① 과세상황
- ② 면제상황
- ③ 관계장 수
- ④ 지방국세청별 과세상황

## -공기연료세

- ① 과세상황

- ② 관계장 수
  - 석유세
    - ① 과세상황
    - ② 관세분 과세상황
    - ③ 면제상황
    - ④ 관계장 수
  - 취득(取引)소세
    - ① 과세상황
    - ② 취득소 수 및 회원수
  - 인지세
    - ① 과세상황
    - ② 과세상황의 연도별 비교
  - 전원개발촉진세
    - ① 과세상황
    - ② 관계장 수
- 4) 제4편 징수편
- (1) 국세징수
    - 국세징수상황
      - ① 국세징수상황
      - ② 지방국세청별 징수결정제액
      - ③ 시도별 징수상황
    - 물납 및 연부연납
      - ① 물납상황
      - ② 물납재산 내역
      - ③ 연부연납상황
  - (2) 국세채납
    - 채납상황
    - 지방국세청별 1000만엔 이상 채납자
    - 지방국세청별 채납상황
  - (3) 환부금
    - ① 환부금의 지불결정 상황
- 5) 제5편 기타
- (1) 불복심사
    - ① 이의신청

- ② 심사청구
  - ③ 지방국세청별 이의신청
  - ④ 국세불복심판소 지부별 심사청구
  - ⑤ 상담·불평(苦情) 수리상황
- (2) 소송사건
- ① 국측피고사건
  - ② 국측원고사건
  - ③ 국측피고사건의 지방국세청별 내역
  - ④ 국측원고사건의 지방국세청별 내역
- (3) 직접국세법칙사건
- ① 고발사건수
  - ② 국세법칙단속(取締)법에 기초한 조사 및 처리건수
  - ③ 기소 사건수 및 유죄 인원, 금액
  - ④ 법칙자 위반행위별 건수
- (4) 간접국세법칙사건
- ① 검거 및 처리상황
  - ② 통고처분 및 이행상황
  - ③ 주세의 위반행위별 검거상황
  - ④ 주세 이외의 간접세 위반행위별 검거상황
- (5) 납세저축조합
- ① 납세저축조합(국세조합) 상황
- (6) 세무사(稅理士)등록자수
- ② 세무사등록자수
- (7) 平成 원년 4월 1일 이후 폐지된 세목의 연도별 비교

## 5. 대만의 조세 관련 통계자료 분석

(『賦稅統計年報』中華民國 83年(1993))

### 가. 특징

- 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세통계연보』와 유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2) 특이한 점으로 통계표의 세율 자료를 들 수 있다. 각 세목별로 세율과 면세 점, 공제액 등의 변천을 연도별 자료로(일부 세목의 경우 계급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3) 한편 대부분의 자료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어서 과거 20년 정도의 자료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

## 나. 구성

### 1) 개요분석

### 2) 통계표

#### (1) 세수통계

① 세목별

② 연월별

③ 시도별

#### (2) 세율

#### (3) 세원통계

#### (4) 기타

## 다. 기본적인 통계

### 1) 세수통계

#### (1) 세목별<sup>9)10)</sup>

##### ① 연도별 총세수

→ 연도별로 국세, 지방세의 총세수를 보임.

##### ② 연도별 국세 세목별 비교 : 부가세와 임시세 포함.

→ 연도별로 국세의 각 세목별로 수입을 제시하고 비교함.

##### ③ 연도별 국세 세목별 비교 : 부가세와 임시세 제외

##### ④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비교 : 임시세와 교육세부가세 포함.

→ 지방세 세목별 수입과 비율을 제시

##### ⑤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비교 : 임시세 제외

##### ⑥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수입 : 부가세와 임시세 포함(다음의 각각의 표로 제시).

-금액

→ 연도별로 각 세목의 세수변화를 제시

-백분비율

9) 이하에서 연도별은 모두 회계연도(대만의 경우 7월~익년 6월)를 의미한다. 단 연월별 통계자료에서 두번째 항목인 연도별 자료는 달력상의 연도(1월~12월: 대만의 경우 曆年이라고 표현)를 의미한다.

10) 이하에서 대만의 세목이 우리나라와 유사 또는 동일한 경우 우리나라의 세목과 같은 이름으로 표기한다.

예) 證券交易稅 → 證券去來稅

→ 연도별로 각 세목의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

-증가율

→ 연도별로 각 세목의 세수증가율을 제시

⑦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수입 : 부가세와 임시세 제외(다음의 각각의 표로 제시)

-금액

-백분비율

-증가율

⑧ 연도별 직접세와 간접세 비교

→ 각 연도별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비를 제시

⑨ 연도별 물품세의 종류별 수입

→ 연도별로 물품세 종류별로 수입을 제시

⑩ 연도별 방위부가세 수입

→ 연도별로 세수를 제시

⑪ 연도별 교육부가세 수입

→ 연도별로 세수 제시

⑫ 연도별 과년도 수입

→ 과년도 수입을 연도별·세목별로 제시

⑬ 연도별 이전연도 세금에 대한 환급

→ 각 연도별로 과년도 세금에 대한 환급액을 세목별로 제시

⑭ 투자장려법에 따른 세액감면

→ 각 연도별로 투자장려를 위해 감면된 세액을 세목별·지방별로 제시

⑮ 투자장려법에 따른 세액감면(계속)

→ 감면조례별로 각 세목의 투자장려 세액감면액과 그 항목을 제시

⑯ 연도별 수출 환급액

→ 연도별로 수출환급액을 세목별로 제시

⑰ 산업촉진법에 따른 세액감면

→ 감면조례별로 각 세목의 산업촉진 세액감면액과 그 항목을 제시

## (2) 연월별

-회계연도별

① 연도별 월별 총세수-방위세부가세와 임시세 포함.

→ 월별로 각 연도의 총세수와 백분비를 제시.

② 연도별 월별 세수-방위세부가세와 임시세 포함.

→ 월별로 각 연도의 세수와 백분비를 제시.

- ③ 연도별 월별 관세수입 - 부가세와 임시세 포함.
  - ④ 연도별 월별 관세수입 - 부가세와 임시세 제외.
  - ⑤ 연도별 월별 관세에 부가된 방위세와 임시세수입액
  - ⑥ 연도별 월별 소금세수입액
  - ⑦ 연도별 월별 광구세수입액
  - ⑧ 연도별 월별 소득세수입액
  - ⑨ 연도별 월별 영리사업소득세(우리나라의 법인세로 추정) 수입액
  - ⑩ 연도별 월별 영리사업소득세수입액 - 공영부분
  - ⑪ 연도별 월별 영리사업소득세수입액 - 민영부분
  - ⑫ 연도별 월별 종합소득세수입액
  - ⑬ 연도별 월별 상속·증여세수입액
  - ⑭ 연도별 월별 물품세수입액
- ※ 이상과 같이 모든 세목별(영업세, 인지세 등)로 연도별 월별 세수액과 백분비를 제시
- 연도별<sup>12)</sup>
- ⑮ 연도별 총세수
    - 연도별로 국세, 지방세의 총세수를 보임
  - ⑯ 연도별 국세 세목별 비교 - 부가세와 임시세 제외
    - 연도별로 국세의 각 세목별 수입을 비교
  - ⑰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비교 - 임시세 제외
    - 지방세 세목별 수입과 비율을 제시
  - ⑱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수입 - 부가세와 임시세 제외(다음의 각각의 표로 제시)
    - 금액
      - 연도별로 각 세목의 세수변화를 제시
    - 백분비율
      - 연도별로 각 세목의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
    - 증가율
      - 연도별로 각 세목의 세수증가율을 제시

12) 달력상의 연도(1월~12월)를 의미함.

## ⑬ 연도별 수출 환급액

→ 연도별 수출 환급액을 세목별로 제시

## (3) 시도별

위의 (2) 연월별 자료를 시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 2) 세율

## (1) 현행세수 배분 비율

→ 세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비율을 각 세목별로 제시

## (2) 연도별 종합소득세의 계급 구조와 세율의 변화

## (3) 연도별 종합소득세의 감면, 면세점 및 공제의 변화

→ 소득세의 감면, 면세점 및 공제에 대하여 결혼유무와 공제한도와 공제내역 등에 대해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4) 연도별 영리사업소득세율과 계급의 변화

## (5) 연도별 상속·증여세율과 계급의 변화

## (6) 연도별 물품세율과 품목의 변화

## (7) 연도별 증권거래세율의 변화

## (8) 연도별 인지세율과 품목의 변화

## 3) 세원통계

## (1) 종합소득세 소득종류의 소득계급별 비교

→ 종합소득세를 소득종류별로 분류하고 각 소득계급별로 소득종류별 금액을 비교 제시

## (2) 영리사업소득세 세원

→ 각 시도별로 영리사업소득액, 납세자수와 세액을 제시

## (3) 상속세 세원

→ 각 시도별로 상속세의 납세자수, 신고건수, 면세, 공제 등을 제시

## (4) 물품세 세원

## (5) 영업세 세원

→ 각 시도별로 업종별 사업자수와 세액을 제시하고 있다.

## (6) 면허세 세원 - 자동차세

## (7) 농지세

※ 면허세, 농지세와 같이 세목별(토지증식세 등)로 우리나라의 『地方稅政年鑑』과 유사한 자료를 제시

## 4) 기타

## (1) 과년도 수입

→ 세목별로 과년도 수입의 건수와 금액을 제시

(2) 본연도 체납 처리

(3) 과년도 체납 처리

(4) 탈세 및 벌금 처리 -세목별

→ 수리건수와 심리건수, 벌금액을 세목별로 제시

(5) 탈세 및 벌금 처리 -지역별

(6) 연도별 실 세액과 징수비용

→ 연도별로 각 세목의 징수비용, 실 세액을 제시

※ 나머지에서는 관세에 대한 통계와 국민소득 대비 세부담률, 각국비교 등을 제시